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 고급 사고능력시험의 표준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

2015. 4. 3(금) 14:00 ~ 18:0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의실(중부등기소 5층)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 고급 사고능력시험의 표준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

2015. 4. 3(금) 14:00 ~ 18:0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의실(중부등기소 5층)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공청회 진행 순서

■ 일시: 2015년 4월 3일(금) 14:00 ~ 18:00

■ 장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

시 간	진 행 내 용
13:40 - 14:00	등 록
14:00 - 14:40	<p>◆ 개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신영호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축 사 : 이점인 연구사업단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소개 : 권병진 연구실장(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14:40 - 14:45	휴 식
14:45 - 15:45	<p>◆ 주제 발표 1부 사회: 김하열 교수(고려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개선 방향/ 민찬홍 교수(한양대학교) • 현행 법학적성시험과 개선안에 관한 설문분석/ 김재철 교수(한남대학교) •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15:45 - 16:00	휴 식
16:00 - 17:00	<p>◆ 주제 발표 2부 사회: 장재옥 교수(중앙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전문가에게 요청되는 능력과 법학적성시험/ 하재홍 교수(경기대학교) • 고급 사고능력시험의 표준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 송하석 교수(아주대학교) • 논술 시험 채점 방식의 개선에 대한 제안/ 박정하 교수(성균관대학교)
17:00 - 17:10	휴 식
17:10 - 17:55	<p>◆ 종합 토론 사회: 장재옥 교수(중앙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토론자 : 안준홍 교수(가천대학교), 신동룡 교수(강원대학교)
17:55 - 18:00	<p>◆ 폐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사 : 이점인 연구사업단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CONTENTS

∴ 발표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주요 내용	1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01.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개선 방향	39
민 찬 홍 (한양대학교 교수)	
02. 현행 법학적성시험과 그 개선안에 관한 설문분석	47
김 재 철 (한남대학교 교수)	
03.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63
현 소 혜 (성균관대학교 교수)	
04. 법률 전문가에게 요청되는 능력과 법학적성시험	79
하 재 홍 (경기대학교 교수)	
05. 고급 사고능력 시험의 표준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	89
송 하 석 (아주대학교 교수)	
06. 논술 시험 채점 방식의 개선에 대한 제안	97
박 정 하 (성균관대학교 교수)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자료집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주요 내용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주요 내용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1. 법학적성시험 개선의 목적

현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였다. 유능함과 덕을 갖추고 시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발전과 내실화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장차 유능함과 덕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를 선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필수 자료로 사용되는 법학적성시험은 수험생이 습득하고 있는 지식의 양이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 산출, 비판하는 지성적 능력과 세계와 사회에 대한 지성적, 윤리적 관심과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시험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2007년에 현재 모습의 법학적성시험이 설계되어 1회 시험인 2009학년도 시험부터 작년 7회 시험인 2015학년도 시험까지 출제되고 시행되었다. 그리고 올해 8회 시험인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도 동일한 형식으로 출제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시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 수험생의 반응,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법학적성시험을 도입한 본래의 목적을 좀 더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험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학적성시험도 대학생의 창의적 지적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학적성시험 개선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문항 유형, 문항 풀이 방법 및 평가 대상 능력에 따른 과목 분리:

여러 과목에서 수험생의 능력을 중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시에 한 과목에서 문항 풀이 방법이 매우 다른 문항 유형들이 혼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 속도 측정 대신에 능력 측정을 지향:

시험 시간과 문항 유형을 조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독해나 문제 해결의 속도가 아니라 깊은 이해력과 사고력에 근거한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측정하려는 본래의 시험 목적을 더 충실히 실현하고자 하였다.

■ 출제 안정성, 시험 예측 가능성, 시험 준비 공부 편리성 도모:

정교한 문항 분류를 통해 문항 유형을 확정하고 이러한 유형에 맞는 정형화된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출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험 준비생들이 시험을 충분히 예측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험의 교육적 기능 제고:

시험 준비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기출 문항들의 지속적 풀이를 통해 독해력, 추리력,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문항 유형을 개발 및 확정함으로써 시험의 교육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논술 시험의 입학전형자료로서의 활용도 제고

논술 시험 문항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수험생의 종합적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로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 개선 법학적성시험의 과목 및 성격

법학적성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은 다음의 구성 및 성격을 가진다.

-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지원자의 학습 능력과 지성적, 윤리적 관심과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 [독해], [추리], [비판], [논술] 네 과목으로 구성된다.
- [독해]는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및 깊은 이해와 처리 능력을, [추리]는 이해한 지식이나 정보로부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산출하거나 이해한 지식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비판]은 새로운 지식, 정보 또는 의견을 산출하는 과정인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주로 측정한다. [논술]은 지식이나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이러한 사고의 내용을 체계적이며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더 나아가 [논술]은 수험생이 세계와 사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성적, 윤리적 관심의 폭과 깊이를 파악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 법학적성시험은 수험생이 습득한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 및 이해, 처리, 재창출,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각 과목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공부하여 습득한 특정 전공의 지식이 성적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작된다.
- 법학적성시험은 치밀한 분석과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포함한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법률 전문가가 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단편적인 지식의 빠른 습득과 암기 능력보다는 지식이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깊이 이해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수험생이 충분히 생각하고 문항을 풀 수 있도록 문항이 출제되고 시험 시간이 배정된다.

3. 현행 법학적성시험과 개선 법학적성시험의 시험 과목,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비교

■ 현행

	1교시	2교시	3교시	비고
과목명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문항 수	35 문항	35문항	2 문항	논술을 제외한 총 문항 수: 70 문항
시험 시간	80분	110분	120분	휴식 시간을 제외한 총 시험 시간: 310분
문항 당 시험 시간	2분 17초	3분 8초		

■ 개선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비고
과목명	독해	추리	비판	논술	
문항 수	25 문항	25 문항	25 문항	2 문항	논술을 제외한 총 문항 수: 75 문항
시험 시간	70분	60분	80분	100분	휴식 시간을 제외한 총 시험 시간: 310분
문항 당 시험 시간	2분 48초	2분 24초	3분 12초		

4. 현행 법학적성시험과 개선 법학적성시험의 문항 유형 비교

■ 현행

[언어이해]

내용 영역	인지 활동 유형	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추리논증]

인지 활동 유형 추리의 내용 영역	추리			논증			인지 활동 유형 논증의 내용 영역	
	언어 추리	수리 추리	논리 게임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논리학·수학								
인문학							인문학	이론적 논변
사회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과학·기술	
							일상적·도덕적 논변	실천적 논변
							의사 결정	
							법적 논변	

[논술]

인지 활동 유형 내용 영역	분석		구성		
	논제분석	제시문분석	논증	창의	표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 개선안

[독해]

내용 영역	문항 유형	주제, 요지, 구조 파악	의도, 관점, 입장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인문						
사회						
과학기술						
윤리·규범						

[추리]

내용영역	문항유형	일상 언어 추리			모형 추리		
		함축 및 귀결	원리적용	사실관계 추리	형식적 추리	논리 게임	수리 추리
논리학·수학							
인문							
사회							
과학기술							
윤리·규범							

* 일상 언어 추리: 일상 언어로 표현된 알려진 현실적 정보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 측정
 * 모형 추리: 주어진 조건이나 정보가 참이 되는 가능 상황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단순화한 것에 기초하여 추리하는 능력 측정.
 (*모형 추리 문항은 세트 문항 형식으로, 즉, 하나의 조건에 대하여 2~3개의 문항이 뒤따르는 형식으로 제작될 예정임.)

[비판]

내용영역	문항유형	논증분석			논쟁 및 반론			평가 및 문제해결			
		명시적 요소 분석	암묵적 요소 분석	구조 분석	논쟁 분석 및 평가	반론 구성	오류	연역논증 평가	귀납논증 평가	강화 또는 약화	문제 해결
인문											
사회											
과학기술											
윤리·규범											

* 논증 분석: 논증의 요소와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 측정
 * 논쟁 및 반론: 논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과 더불어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포함한 반론을 구성하는 능력 측정
 * 평가 및 문제해결: 논증을 평가하는 능력,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강도를 평가하는 능력, 합리적인 선택과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

[논술]

기존의 논술 과목에서는 요약·종합형, 논증 분석·추론형, 논증 비판·평가형, 적용·발전형 및 그 유형들의 혼합형 문항이 출제되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 문항 유형 외에도 법률가에게 필요한 사고와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으며, 기존 문항 유형을 포함하여 출제 가능한 대표적인 문항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요약·종합형 ② 논증 분석·추론형 ③ 논증 비판·평가형 ④ 적용·발전형 ⑤ 선택 근거 제시형 ⑥ 사례-원칙 연계형

5. 문항 유형별 예시 문항

[독해]

(1) 주제, 요지, 구조 파악

2015학년도 22번 문항

이 문항은 ‘회색 지대’라는 중심 개념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15학년도)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된다. 아우슈비츠에서도 일상은 있었다. 수감자들은 적어도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 선택의 폭은 상당히 다양했다. 그곳에서도 인간은 행위 주체였던 것이다. 그들은 극한 상황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경험했고, 전유했으며, 행동에 옮겼다. 따라서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아우슈비츠의 일상’은 존재했으며, ‘아우슈비츠의 일상사(日常史)’ 또한 가능하다. 대체로 역사 서술의 주 대상은 사회 전체나 개인을 움직이는 구조와 힘이지만, 일상사의 관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어떤 역사적 구체(具體)를 생산하고 변형하는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는 ‘극한 상황 속의 일상’, 즉 ‘비상한 일상’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공격당하며 무너지고 파멸로 치달아 가는 인간성을, 또 어떻게 인간성이 살아남고 소생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레비는 ‘회색 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비상한 일상’ 속의 삶의 양태를 제대로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한 삶의 방식은 포기와 순응이었다. 그들 중 살아남은 이는 극소수였다. 그는 이들을 ‘끊임없이 교체되면서도 늘 똑같은, 침묵 속에 행진하고 힘들게 노동하는 익명의 군중/비인간’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누구인가? 먼저 친위대의 선택을 받아 권한을 얻어 ‘특권층’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 ‘특권층’은 수감자 중 소수였지만,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여 주었다. 기본적으로 배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음식이 더 필요했고, 이를 위해 크든 작든 ‘특권’을 얻어야 했다. 그리고 특권은 그 정의상 특권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예를 들어 막 도착한 ‘신참’을 기다리는 것은 동료의 위로가 아니라, ‘특권층’의 고함과 욕설, 그리고 주먹이었다. 그는 ‘신참’을 길들이려 하고, 자신은 잃었지만 상대는 아직 간직하고 있을 존엄의 불씨를 꺼뜨리고자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다. ‘특권층’이 아니면서도 생존 본능에 의지한 채 ‘정글’에 적응했던 사람들이다. 체면과 양심을 돌보지 않은 그들의 삶은 만인에 맞선 단독자의 고통스럽고 힘든 투쟁을 함축했고, 따라서 도덕률에 대한 적지 않은 이탈과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회색 지대’는 가해자와 희생자, 주인과 노예가 갈라지면서도 모이는 곳, 우리

의 판단을 그 자체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다. 그리하여 ‘회색 지대’는 이 불법적 사고 경향에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호성이 ‘회색 지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호성의 원천은 다양하다. 먼저 악과 무고함이 뒤섞여 있다. 수감자들은 기본적으로 무고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 ‘회색인’의 행위는 무고하면서 무고하지 않다는 역설은 여기서 성립한다. 물론 그가 행하는 악과 나치가 행하는 악은 분명 차원이 다르다. 또 다른 원천은 행위자의 동기에 있다. 예컨대 구역장은 ‘특권층’으로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겉으로는 협력하면서도 실은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소수는 이 권한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저항 조직을 위해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색 지대’를 만들었는가? 첫째, 나치는 인력의 부족 때문에 피억압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 협력자들은 한때 적이었으므로, 이들을 장악하는 최선의 길은 그들을 더럽혀 공모의 유대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억압이 거셀수록 그만큼 피억압자 사이에서 기꺼이 협력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엄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로 ‘회색인’이 된다. 그런데 ‘회색 지대’의 이런 모호성은 심각한 혼란과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가해자와 희생자가 뒤바뀌고 또 뒤섞이는 상황을 보며, 누구에게도 책임의 소재를 묻기 어렵다고 강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레비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다른 것이다. 그는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한다. 가해자인 나치는 악하며 피해자인 수감자는 무고하다는 단순한 이분법은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그저 수동적인 것으로, 통념이 된 화석으로만 만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되묻고 통념을 토대에서부터 문제시하는 데 있다. ‘괴물’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얼굴을 돌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2. ‘회색 지대’ 개념이 가지는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여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 ②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심리를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한다.
- ③ 피해자들 간에 공모의 유대가 있음을 드러내어 역사적 진실을 규명한다.
- ④ 역사적 구체들을 분석하고 정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다.
- ⑤ 이분법적 분류를 넘어서게 하여 적극적 협력자에 대한 능동적 단죄를 요청한다.

정답: ①

(2) 의도, 관점, 입장 파악

2014학년도 1번 문항

미국발 금융 위기의 원인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2008년의 미국발 금융 위기와 관련해 ‘증권화’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증권화란 대출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이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을 시장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당시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기관, 곧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유동화해 이를 투자은행,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사 등에 매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기지 유동화 증권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들어올 현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고,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광범위한 투자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다. 증권화는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금융 혁신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금융 위기가 일어나면서 증권화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당시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집값 대비 대출금액이 높았던 비우량(subprime) 모기지 대출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계속 상승해 왔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채무 불이행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비우량 모기지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된 신종 유가증권들이 대형 투자은행 등 다양한 투자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유·유통되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증권화로 인해 보다 안전해졌다는 과신 속에서 과도한 차입을 통해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유가증권들의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화를 확대한 금융기관과 이를 허용한 감독당국에 비판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위기의 원인이 증권화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었다.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긍정하는 이 ‘정부 주범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던 것이 금융 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불평등 심화의 근본 원인은 기술 변화와 세계화이므로 그 해법 또한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에서 찾아야 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저소득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빚을 늘려 집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미봉책을 펼쳤는데, 그로 인해 주택 가격 거품이 발생했고 마침내는 금융 위기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거론된 것이 바로 지역재투자법이다.

지역재투자법이란 저소득층의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낙후 지역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정부 주범론’은 이 법

으로 인해 은행들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들에게까지 주택 자금 대출을 늘려야 했고, 이것이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정부 주범론’은 여기에 더해 지역재투자법의 추가적인 파급 효과에도 주목한다. 금융기관들은 지역재투자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심사 관련 기강이 느슨해졌고 지역재투자법과 무관한 대출에 대해서까지도 대출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주택 가격 거품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주범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주장이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 ‘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다양한 논거들이 ‘규제 실패론’의 이름으로 제시되었고, ‘정부 주범론’의 정치적 매력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규제 실패론’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차입 및 증권화가 이들의 적극적인 로비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이 실물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규제 실패론’은 또한 지난 삼십 년 동안 소득 분배가 계속 불평등해지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소득을 얻게 된 부유층이 특히 금융에 대한 투자와 감세를 통해 부를 한층 키워 왔던 구조적 특징과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주목한다. 저소득층의 부채란 정치권의 온정주의가 아니라 부유층과 금융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것이라는 이 지적은 불평등의 심화와 금융 위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1. 위 글에 나타난 입장들에 관한 진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 주범론’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 주체들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본다.
- ② ‘정부 주범론’은 정치권이 지역재투자법으로 저소득층의 표를 얻으려 했다고 본다.
- ③ ‘규제 실패론’은 금융과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비판한다.
- ④ ‘규제 실패론’은 가계 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투자 기회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 ⑤ ‘정부 주범론’과 ‘규제 실패론’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정답: ⑤

(3)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2015학년도 24번 문항

이 문항은 인격체에 대한 살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시문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격체는 인간이나 유인원과 같은 동물처럼 자의의식을 지닌 합리적 존재인데, 이들은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그러한 인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물고기와 같은 동물은 비인격체로서 자의의식이 없으며 단지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능력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인격체를 죽이는 것이 비인격체를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나쁘다고 간주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그것이 살해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라고 해도 이를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고전적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불리일으키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기준으로 그 행위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린다. 이 관점을 따를 경우에 그러한 살인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도 않고 고통과 쾌락을 느낄 주체 자체를 아예 없애기 때문에 이를 나쁘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살자가 겪게 되는 고통의 증가라는 ‘직접적 이유’를 내세워 그러한 형태의 살인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고전적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피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증가라는 ‘간접적 이유’를 내세워 인격체에 대한 살생을 나쁘다고 비판할 수 있다. 살인 사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비인격체와는 달리 자신도 언젠가 살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고통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살인이 나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선호 공리주의’는 인격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러한 살인을 나쁘다고 보는 직접적 이유를 제시한다. 이 관점은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선호들의 충족이나 좌절을 기준으로 그 행위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린다. 따라서 고통 없이 죽이는 경우라고 해도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려고 하는 선호를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나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격체는 비인격체에 비해 대단히 미래 지향적이다. 그러므로 인격체를 죽이는 행위는 단지 하나의 선호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에 하려고 했던 여러 일들까지 좌절시키는 것이므로 비인격체를 죽이는 행위보다 더 나쁘다.

‘자율성론’은 공리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여 살인을 나쁘다고 비판하는 직접적 이유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어떤 행위가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그 행위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린다. 인격체는 비인격체와는 달리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며, 그러한 인격체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인격체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가장 근본적인 선택인데, 죽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가장 심각한 자율성의 침해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는 자율성의 존중 그 자체를 독립적인 가치나 근본적인 도덕 원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자율성의 존중이 대체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그것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인격체의 살생과 관련된 이러한 논변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유인원과 같은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고전적 공리주의의 논변은 유인원과 같은 동물에게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 비해 그런 동물은 멀리서 발생한 동료의 살생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실험과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은 자기의식을 지닌 합리적 존재로서 선호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격적 특성을 지닌 존재를 단지 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런 존재를 죽이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이다.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특별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면 인격체인 유인원과 같은 동물도 그러한 특별한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24.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율성의 존재 여부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 ② 모든 동물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미래 지향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 ③ 죽음과 관련하여 모든 동물의 생명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 ④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은 인격체와 비인격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 ⑤ 인격적 특성을 가진 동물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비교하여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 ①

(4) 정보의 추론과 해석

2015학년도 25번 문항

이 문항은 ‘고전적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자율성론’의 입장에서부터 선택지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추론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위와 동일한 제시문

25. 밑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떠한 선호도 가지지 않는 존재를 죽이는 행위가 다른 존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선호 공리주의는 그 행위를 나쁘다고 비판하기 어렵다.
- ② 아무도 모르게 고통을 주지 않고 살인을 하는 경우라면 고전적 공리주의는 ‘간접적 이유’를 근거로 이를 비판하기 어렵다.
- ③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 고전적 공리주의는 ‘직접적 이유’를 근거로 비판하기 어렵다.
- ④ 인격체 살생에 대한 찬반 문제에서 공리주의와 자율성론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 ⑤ 자율성론에서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죽기를 원하는 경우에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④

(5) 정보의 평가와 적용

2015학년도 26번 문항

이 문항은 ‘고전적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자율성론’의 관점을 <보기>의 두 가지 상황에 나타난 행위에 적용하여 적절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위와 동일한 제시문

26. <보기>의 갑과 을의 행위에 대한 아래의 평가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갑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기대, 삶의 욕망 등을 갖고 행복하게 살던 고릴라를 약물을 사용하여 고통 없이 죽였다. 이 죽음은 다른 고릴라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죽음의 공포를 주었으며, 그 이외의 영향은 없다.
- 을은 눈앞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는 욕구만을 지닌 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던 물고기를 고통을 주는 도구를 사용하여 죽였으며, 그 죽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는 없다.

- ㄱ. 고전적 공리주의는 갑의 행위는 나쁘지만 을의 행위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 ㄴ. 선호 공리주의는 갑의 행위가 을의 행위에 비해 더 나쁘다고 본다.
- ㄷ. 자율성론은 갑의 행위와 을의 행위가 모두 나쁘다고 본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②

[추리]

• 일상 언어 추리

(1) 함축 및 귀결

2013학년도 4번 문항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의 보호 여부에 대한 갑과 을의 논변을 분석하고, 각자의 논지에 따른 경우 어떤 진술이 함축되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4. 다음 대화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아무리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몇 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어.

을 :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아?

갑 : 물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겠지. 하지만 권리행사가 법률상 가능했던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우리의 사회생활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봐.

을 :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야.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거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 ① 갑의 주장에 따르면, 인접 지역에 고층빌딩이 건축됨으로써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된 사람은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층빌딩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 ② 을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후 정치·사회적 상황상 수십 년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던 사람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을의 주장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었던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 줄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실제로 법정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④ 갑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에 의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으나 오랜 시간 동안 보상에 관한 법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법규정의 흠결이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이후에는 보상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을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IDS가 발병한 후 자신의 병이 20년 전 투여 받은 HIV 감염 혈액제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위 혈액제제를 투여한 의사 또는 위 혈액제제를 제조·공급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답: ⑤

(2) 원리 적용

2015학년도 21번 문항

과학 연구 결과에 대해 우선권(priority)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을 제시한 후, 수학사에서 잘 알려진 우선권 논쟁의 두 사례에 적용하여 누가 어떤 조건 하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함.

21.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과학자가 자신이 수행한 연구 결과의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 만족해야 할 조건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F-조건 : 연구 결과는 산출 당시 관련 학문의 지식에 비추어 최초의 것이어야 한다.

I-조건 : 연구 결과는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성취한 것이어야 한다.

P-조건 : 연구 결과가 동료 연구자에게 학술지, 저서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 16세기 초 델 페로는 3차 방정식의 한 형태인 ‘약화된’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최초로 발견하였으나 이를 학계에 공개하지 않고 죽었다. 동시대의 타르탈리아는 독자적으로 ‘약화된’ 3차 방정식을 포함한 3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을 최초로 발견하였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카르다노는 타르탈리아를 설득하여 이 해법을 알게 되었지만 타르탈리아의 허락 없이는 해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그 내용을 출판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카르다노는 델 페로가 타르탈리아보다 먼저 ‘약화된’ 3차 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3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을 1545년 「위대한 기예」 라는 저서에서 발표하였다.
- 뉴턴은 미적분법을 누구보다 먼저 1666년부터 연구해 왔지만 완성된 전체 내용을 공식적으로 출판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 후 라이프니츠는 1675년부터 미적분법에 대한 독자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완성된 내용을 정리하여 1684년 논문으로 출판하였다. 뉴턴은 1687년에야 자신의 미적분법 연구를 「프린키피아」 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 ① F-조건만을 적용하면, 델 페로는 3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 ② I-조건만을 적용하면, 타르탈리아가 아니라 카르다노만이 3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 ③ F-조건과 I-조건을 모두 적용하면, 타르탈리아와 뉴턴 모두 우선권을 가진다.
- ④ 세 조건을 모두 적용하면, 우선권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⑤ ‘약화된’ 3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 델 페로와 타르탈리아 모두 우선권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조건만을 적용하면, 미적분법에 대해 라이프니츠만 우선권을 가진다.

정답: ③

(3) 사실관계 추리

2012학년도 4번 문항

이 문제는 하나의 특정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이 제시되었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관계와 추가적인 정보를 토대로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4. 다음 글에 비추어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아래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고, 확인된 사실은 (가)~(바)와 같다.

검 사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가해 트럭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 나는 2010년 9월경 사고차량인 트럭을 도난당했고, 사고 당시에 가해 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가) 2010년 11월 6일 06 : 00경 ○○시의 시내 교차로에서 L이 운전하던 택시를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신원불명의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고를 낸 트럭의 소유자이지만 도난신고를 한 일은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이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고 다른 범죄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라) 사고 직후 트럭 안에서 휴대전화 1개, 피고인 앞으로 발부된 범칙금납부고지서가 발견되었지만, 그 외에 운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위 휴대전화의 발신번호 및 통화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사고 당일 01 : 30경부터 01 : 33경까지 K의 휴대전화로 5차례 발신된 사실이 있다.

(바) L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운전한 것을 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K는 자신이 피고인의 선배이며 (마)의 발신인이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① (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검사 주장의 전제는 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다.
- ②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검사는 (다)를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 ③ (라)의 범칙금납부고지서가 2010년 8월 10일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이 사실만으로는 검사와 피고인 주장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 ④ (바)에서의 L과 K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있다면, L과 K의 진술은 검사 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⑤ 검사와 피고인 주장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며, (가)~(마)가 모두 사실인 경우 두 사람의 주장은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

정답: ⑤

• 모형 추리

(4) 형식적 추리

2009학년도 24번 문항

문장들의 논리적 관계와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리에 의해 각 문장들의 진리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24. 어느 과학자는 자신이 세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는 여섯 명제 A, B, C, D, E, F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들 중 F가 거짓이라는 것과 다른 한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명제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이 과학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참인 명제는?

- B가 거짓이거나 C가 참이면, A는 거짓이다.
- C가 참이거나 D가 참이면, B가 거짓이고 F는 참이다.
- C가 참이거나 E가 거짓이면, B가 거짓이거나 F가 참이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정답: ①

(5) 논리게임

2013학년도 12번 문항을 1 제시문 3 문항 문제로 변형

주어진 제약조건(〈시상규칙〉)과 추가적인 정보(같은 계절에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분야에 상을 수여했다)를 토대로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표나 그림으로 적절히 정리하여, 참일 수 있는 진술과 참일 수 없는 진술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12~14] 한국화학회는 〈시상규칙〉에 따라 학술상을 수여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한국화학회가 같은 계절에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분야에 상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 해 수상 사실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시상규칙〉

- 매년 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의 네 분야에 대해서만 수여한다.
-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수여하며 매 계절 적어도 한 분야에 수여한다.
- 각각의 분야에 매년 적어도 한 번 상을 수여한다.
- 매년 최대 여섯 개까지 상을 수여한다.
- 한 계절에 같은 분야에 두 개 이상의 상을 수여하지 않는다.
- 두 계절 연속으로 같은 분야에 상을 수여하지 않는다.
- 물리화학 분야에는 매년 두 개의 상을 수여한다.
- 여름에 유기화학 분야에 상을 수여한다.

12. 2010년 한국화학회 학술상에 관한 다음 진술 중 반드시 참인 것은?

- ① 유기화학에는 한 개의 상이 수여되었다.
- ② 분석화학에는 두 개의 상이 수여되었다.
- ③ 만약 유기화학에 두 개의 상이 수여되었다면, 분석화학에는 한 개의 상이 수여되었다.
- ④ 만약 분석화학에 한 개의 상이 수여되었다면, 무기화학에는 두 개의 상이 수여되었다.
- ⑤ 만약 분석화학과 무기화학에 각각 한 개의 상이 수여되었다면, 유기화학에는 두 개의 상이 수여되었다.

13. 2010년 한국화학회 학술상에 관한 다음 추정 중 가능한 것은?

- ① 봄에 무기화학상이 수여되었을 수 있다.
- ② 봄에 세 분야의 상이 함께 수여되었을 수 있다.
- ③ 여름에 네 분야의 상이 함께 수여되었을 수 있다.
- ④ 가을에 세 분야의 상이 함께 수여되었을 수 있다.
- ⑤ 겨울에 세 분야의 상이 함께 수여되었을 수 있다.

14. 2010년 한국화학회 학술상에 관한 다음 진술 중 현재 알려진 사실에 비추어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은?

- ① 봄에 분석화학 분야에 상이 수여되었다.
- ② 여름에 분석화학 분야에 상이 수여되었다.
- ③ 여름에 물리화학 분야에 상이 수여되었다.
- ④ 가을에 무기화학 분야에 상이 수여되었다.
- ⑤ 겨울에 유기화학 분야에 상이 수여되었다.

정답: 12번 문항 ③

13번 문항 ⑤

14번 문항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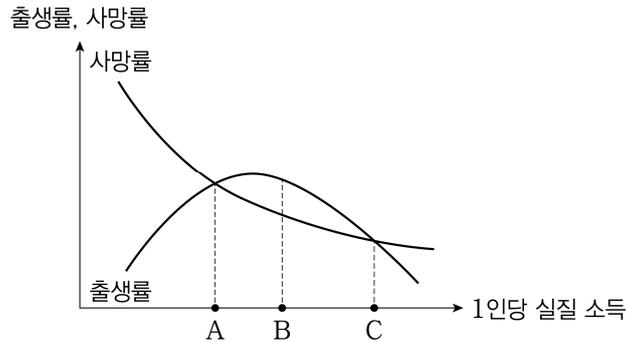
(6) 수리추리

2015학년도 26번 문항

1인당 실질 소득 증가에 따른 출생률과 사망률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로부터 인구 변화와 전체 실질 소득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26.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래 그림은 Z국의 1인당 실질 소득과 사망률 및 출생률을 나타낸다. Z국의 1인당 실질 소득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했고 출생률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B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 가장 큰 점이다. 단, 인구의 유출입은 없었다.



<보 기>

- ㄱ. 인구는 B에서 최대가 되었다.
- ㄴ. A~C 구간에서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 ㄷ. Z국 전체의 실질 소득은 꾸준히 증가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②

[비판]

- 논증 분석

(1) 명시적 요소 분석

2012학년도 18번 문항

정의가 없는 왕국은 거대한 강도떼와 다름없음을 논증하고 있는 제시문을 주고, 논증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주요 전제들의 내용과 논증 전개 방식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 다음 논증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의가 없는 왕국이란 거대한 강도떼가 아니고 무엇인가? 강도떼도 나름대로는 작은 왕국이 아닌가? 강도떼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집단도 두목 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공동체의 규약에 의해 조직되며, 약탈물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 만약 어느 약당이 무뢰한들을 거두어 모아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서 일정한 지역을 확보하고 거주지를 정하거나, 도성을 장악하고 국민을 굴복시킬 지경이 된다면 아주 간편하게 왕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런 집단은 야욕을 억제해서가 아니라 야욕을 부리고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당당하게 왕국이라는 명칭과 실체를 얻는 것이다. 사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손에 사로잡힌 어느 해적이 대왕에게 한 답변에서 이런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해적에게 무슨 생각으로 바다에서 남을 괴롭히는 짓을 저지르고 다니느냐고 문초하자, 해적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거침없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한다. “그것은 폐하께서 전 세계를 괴롭히시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단지 저는 작은 배 한 척으로 그 일을 하는 까닭에 해적이라 불리고, 폐하께서는 대함대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는 까닭에 대왕이라고 불리시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

- ① 정의가 없는 왕국과 강도떼의 차이를 명칭과 규모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② 정의가 없는 왕국과 강도떼가 야욕과 처벌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③ 정의가 없는 왕국과 강도떼의 공통점을 지배 체제와 공동체의 조직 원리에서 찾고 있다.
- ④ 강도떼가 발전하여 정의가 없는 왕국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여 둘의 차이를 좁히는 전략을 쓰고 있다.
- 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해적의 대화를 통해 정의가 없는 왕국과 강도떼의 유비(類比)의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

정답: ②

(2) 암묵적 요소 분석

2009학년도 27번 문항

제시문의 추론을 위해 필요한 전제를 묻고 있어서 암묵적 요소를 분석하는 문제에 해당된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추론 자체의 타당성보다는 <자료>와 <추론> 사이의 논증적 관계를 분석하여 암묵적 전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27. 다음 자료와 그에 근거한 추론에서, ㉠~㉣ 각각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전제가 아닌 것은?

<자료>

A : 연(燕)은 북쪽으로 오환, 부여와 가까이 있었고, 동쪽에 있는 예맥, 조선, 진번과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 『사기』, 화식열전 -

B : 부여는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 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고구려, 동쪽으로는 읍루, 서쪽으로는 선비와 인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弱水)라는 하천이 있다. …… 부여는 동이의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으로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

- 『후한서』, 동이전 부여 -

<추론>

부여 건국의 연대에 관해서는 사서(史書)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없으나 A에서 부여는 연, 오환과 함께 존재한 나라로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연은 전국 시대의 연국(燕國)이거나 전한(前漢)의 연 지역이다. 그런데 동호족(東胡族)의 한 지파인 오환은 전한보다 조금 늦게 등장한 나라이므로, ㉠이 연은 전한의 연 지역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여는 전한대 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여의 위치에 관한 구체적 서술은 『후한서』에서 나타난다. ㉢『후한서』에 B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여는 후한(後漢)대에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B를 보면 부여가 후한의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현도는 현도군을 말한다. 현도군은 원래 전한대에 압록강 유역에 설치되었지만 기원전 1세기 말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서북방으로 이동하였다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사이에 혼하 유역으로 이동해 갔다.

후한은 1세기 초에 세워졌으므로 B의 현도는 고구려 밖의 서북지역에 있던 현도군이거나 혼하 유역에 있던 현도군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B에서 부여가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 리 떨어져 있고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에 있다고 했으므로 ㉣B의 현도는 혼하 유역의 현도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여는 송화강 유역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① ㉠— 전국 시대의 연국은 전한이 등장했을 때 존재하지 않았다.
- ② ㉡— 부여는 전국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 ③ ㉢— 『후한서』는 후한대의 사실을 기록한 사서이다.

- ④ ㉔—고구려 밖 서북 지역에서 북쪽으로 천 리쯤 떨어진 곳에는 넓은 평야 지대가 없다.
- ⑤ ㉕—혼하 유역에서 북쪽으로 천 리쯤 떨어진 곳에는 송화강이 있다.

정답: ②

(3) 구조 분석

2010학년도 18번 문항

제시문의 논증은 그 전개 과정 자체가 이미 요소로 분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문항은 논증을 요소로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분석된 요소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분석된 요소가 논증 내에서 서로 어떤 관계, 즉 서로 모순되거나 지지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18. 다음 논증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㉔ 행복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㉕ 그는 이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족적인 만큼 그 어떤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㉖ 친구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니 말이다. 그런데 ㉗ 신이 행복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나눠주면서 친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㉘ 친구가 하는 일이 서로 잘해주는 것이면서 서로의 선행을 받아주는 것이라면,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잘 받아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㉙ 행복한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㉚ 대중은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을 친구로 간주한다. ㉛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로운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㉜ 그러한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 ① 이 논증은 ㉔의 ‘주장’을 반박하는 부분과 ㉔의 ‘주장’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 ② 행복한 사람에게 이로운 친구는 없어도 되지만 자신의 선행을 받아줄 친구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㉔의 ‘주장’이 부정된다.
- ③ ㉕와 ㉖가 결합하여 ㉔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④ ㉘는 ㉗를 뒷받침한다.
- ⑤ ㉚와 ㉛가 결합하여 ㉔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⑤

• 논쟁 및 반론

(4) 논쟁 분석 및 평가

2015학년도 30번 문항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대한 반론을 대화 형식으로 제시하고 논쟁의 각 단계의 쟁점이나 그에 대한 대응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30. A와 B의 논쟁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₁ : 유기체란 특정 유전자가 더 많은 복제본을 만들어 내는 영속적인 과업을 위해 이용하고 버리는 꼭두각시이다. 유기체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 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프로그램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B₁ :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임을 잘 알고 있다. 바이러스도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복제의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도 이기적인가?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 A₂ : 유전자가 심성을 지닌 목적 지향적 존재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의도한 바는, 유기체란 유전자가 자기 복제본의 수를 늘리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기획, 구축, 조작하는 수단이자 도구라는 것이다. 만약 개코원숭이의 어떤 행동이 자신의 생존 및 번식 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존재의 생존 기회를 증진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 행동을 이타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적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 B₂ : 이기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데 과학자인 내가 나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어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내 복제본은 ‘내 이기심’이 귀속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만족감은 줄지 모르지만, 자기 복제를 하는 주체인 나의 수명은 단 1초도 늘려주지 못한다.
- A₃ :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란 DNA의 한 특수한 물리적 조각이 아니라 그것의 ‘모든 복제’를 통칭한다. 특정의 물리적 DNA 분자는 생명이 매우 짧지만, 자신의 복사본 형태로는 1억 년을 생존하는 것도 가능하다.
- B₃ :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예컨대 마이클 잭슨과 똑같은 복제 마이클 잭슨을 만들 수 있다면, 마이클 잭슨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복제한 존재를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생존’이라는 말의 의미 또한 바꾸자는 소리이다.

- ① B₁은 유전자와 바이러스의 유비를 통하여 유기체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② A₂는 '이기적'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B₁에 대응하고 있다.
- ③ B₂는 A₁이 특정 유전자와 그것의 복제 유전자는 서로 구분되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 ④ A₃은 '이기적임'의 성질이 적용되는 대상의 수준이 유기체의 경우와 유전자의 경우에 서로 다를 수 있어서 B₂에 대응하고 있다.
- ⑤ B₃은 A₁의 주장과 반대로 유전자가 유기체의 꼭두각시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⑤

(5) 반론 구성

2015학년도 29번 문항

뇌는 결정되어 있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개인적 책임을 지니며 따라서 사람은 자유롭다는 논증에 대해 반론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29. 다음 논증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경학적 불균형이나 외상 때문에 뇌 기능이 잘못될 수 있고, 이것이 폭력 행위나 범죄 행위의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람들은 그러한 원인 때문에 특정 행동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될지 우려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신경 과학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때, 그때는 이미 뇌가 그것이 발생하도록 만든 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내 스스로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환상이며, 우리는 개인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포기해야 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뇌는 구분될 수 있다. 뇌는 결정되어 있지만, 책임 개념은 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뇌와 달리 사람들은 자유롭고,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

신경 과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뇌 기능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최신의 신경 과학적 지식과 법적 개념이 갖고 있는 가정들에 기반을 두고서 다음의 원칙을 믿는다. 뇌는 자동적이고 법칙 종속적이며 결정론적 도구인 반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행위자들이다. 교통 상황이 물리적으로 결정된 자동차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에 발생하는 것처럼, 책임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책임이란 사회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책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이란 당신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 그리고 타인이 당신의 행동에 대해 부과하는 개념이다.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때 규칙을 따르도록 만드는 상호작용으로부터 행동의 자유라는 개념이 발생한다.

〈보 기〉

- ㄱ. 우리의 선택이나 그에 따른 행위는 미시적인 차원에 속하는 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미시적 요소들을 완전히 이해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할지 아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ㄴ. 나는 나의 육체와 구별되지 않는다. 뇌가 결정론적으로 작동한다면 나의 행동 역시 결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모든 이의 행동이 각기 결정되어 있다면, 물리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의 상호작용 또한 결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달리 행동할 여지를 갖지 않는다.
- ㄷ. 사람들의 행동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관행에 불과하며, 그런 사회적 관행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뿐, 인간이 실제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6) 오류

2013학년도 11번 문항

제시문은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연쇄살인범이라는 주장을 사이코패스의 여러 특징을 동원하여 논증하고 있다. 이 논증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실은 흔하고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 문항은 이런 오류 또는 결함을 찾아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11. 다음 논증의 결함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이 피고인이 얼마 전 일어난 여성 살해 사건의 진범이라는 점은 물증과 정황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그 여성 한 명뿐일까요? 이 피고인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연쇄살인범은 아닐까요? 비록 피고인은 살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가 목격했듯이 피고인은 자기가 연쇄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을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그는 다른 피해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았지만, ㉠ 거짓말 탐지기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한다면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만약 피고인이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데도 자기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을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단호하게 부인한다면, ㉢ 그는 극단적 유형의 사이코패스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인 살인자와 달리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기까지 한다는 점이 여러 사례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살인을 경험한 극단적 유형의 사이코패스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 피고인처럼 당연히 감정적 동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살인을 경험한 극단적 유형의 사이코패스는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 피고인은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 ① ㉠과 모순되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 ② ㉡을 불충분한 수의 사례들로부터 일반화하여 도출하고 있다.
- ③ ㉢에 인신공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④ ㉣을 입증하지 못한 채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⑤ ㉤을 암묵적 전제로 요구하는 동시에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정답: ⑤

• 평가 및 문제해결

(7) 연역논증 평가

2013학년도 10번 문항을 변형함.

비추론적 지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연역 논증이 제시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역 논증은 전체적으로 “모든 지식을 추론적 지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매우 자명하게 받아들여지는 명제와 모순을 일으키므로, 지식에는 추론적 지식 이외에 비추론적 지식이 있다.”는 내용과 귀류법의 형식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논증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해야 논증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로서 주어진 선택지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

10. 다음 논증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로서 옳지 않은 것은?

- ㉠ 다른 지식에서 추론됨으로써 정당화되는 지식이 있다.
- ㉡ 이러한 지식을 ‘추론적 지식’이라고 하고, 추론적 지식이 아닌 지식을 ‘비추론적 지식’이라고 하자.
- ㉢ 모든 지식이 추론적 지식이라고 가정해 보자.
- ㉣ 어떤 추론적 지식을 G1이라고 하면, G1을 추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다른 지식이 있다.
- ㉤ 그중 어떤 것을 G2라고 하면, G2는 추론적 지식이다.
- ㉥ G2를 추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다른 지식이 있고, 그중 하나를 G3이라고 하면 G3도 추론적 지식이다.
- ㉦ 이런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즉, 유한한 수의 추론적 지식이 고리를 이루는 순환의 과정을 통해 정당화되거나, 무한한 수의 추론적 지식에 의해 정당화될 것이다.
- ㉧ 정당화의 과정이 무한히 이어질 수는 없다.
- ㉨ 정당화의 과정이 끝나려면 다른 지식을 정당화하는 어떤 지식은 비추론적 지식이어야 한다.
- ㉩ 그러므로 비추론적 지식이 존재한다.

- ① ㉣ 진술의 참은, 가정 ㉢의 참 또는 거짓 여부에 관계없이, ‘추론적 지식’의 정의인 ㉡에 의해 보장되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 ② G2가 추론적 지식이라는 ㉤ 진술의 참과 G3가 추론적 지식이라는 ㉥ 진술의 참은 G1이 추론적 지식이라는 가정과 ‘추론적 지식’의 정의를 제외한다면 결국 가정 ㉢에 의해 결정적으로 보장된다.
- ③ ㉢~㉥와 ㉠로부터 ㉦가 도출되는 과정은 일견 엄청난 비약이 있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엄밀한 연역 추리 과정으로서 비판의 여지가 없는 추리 과정이다.
- ④ ㉨는 논증을 제시하고 있는 자가 ㉢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진술이므로, 우리가 ㉨의 참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위 논증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 ⑤ 논증을 제시하고 있는 자는 ㉠과 ㉡로부터 추론되는 ㉢가 ㉣와 모순이라는 논리적 사실로부터 ㉠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를 부정하는, 즉 ㉤를 도출하는, 정당한 추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답: ④

(8) 귀납논증 평가

2015학년도 23번 문항

이 문제는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하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육상 식물인 이끼가 다소 역설적으로 따뜻했던 지구를 차갑게 만들어 오르도비스기 말에 빙하기가 도래하도록 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최근 고기후학계의 가설을 소재로 삼아, 주어진 과학적 가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가 가설과 정합적인지, 가설의 설득력을 강화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한다.

23. ㉠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가 시작될 때 지구는 해수 온도가 45°C에 이를 정도로 뜨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오르도비스기 후반기로 갈수록 지구는 차츰 냉각되어 실루리아기로 넘어설 즈음에는 빙하기가 시작되었다. 과학자들은 오르도비스기 초기의 지구 대기에 현재 수준의 14~2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빙하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오르도비스기의 기후 조건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소한 현재 수준의 8배 이하로 떨어져야만 빙하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과 작용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산화탄소 감소의 원인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이론은 당시 활발해진 화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많은 양의 광물이 풍화 과정에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추산에 따르면 이 지구화학적 과정만으로는 오르도비스기 말기에 빙하기가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원인이 최초의 육상 식물인 이끼다. 오르도비스기 중반에 등장한 이끼는 유기산을 분비하여 암석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분리했다. 이것들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엄청난 양의 석회암이 만들어졌다. 또한 이끼에 의한 풍화로 바다에 유입된 무기물 중에는 인과 철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바다에서 해조류가 번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덕분에 급속하게 늘어난 해조류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흡수했다. ㉠ 지구 최초의 육상 식물은 지구를 차츰 냉각시켜 결국 빙하기가 시작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 ① 오르도비스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온실 기체로 기능하지 않았다고 ㉠은 전제하고 있다.
- ② 오르도비스기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지구가 급격히 냉각되었기 때문이라고 ㉠은 전제하고 있다.
- ③ 오르도비스기 해조류의 성장 과정에서 방출되는 물질에 이끼의 번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의 설득력은 강화된다.
- ④ 오르도비스기의 이끼가 호흡과 대사 과정에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석회암의 형성 과정에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많다면 ㉠의 설득력은 약화된다.
- ⑤ ㉠에 대해 이 글에서 제시된 논거를 활용하면, 오늘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오르도비스기 말 빙하기가 시작되기 직전보다 훨씬 적은데도 현재가 빙하기가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④

(9) 강화 또는 약화

2012학년도 25번 문항

이 문항은 제시문에 설명된 두 가설에 대해 추가적 사실이 주어지면 각각의 가설의 설득력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이 문항의 핵심은 경쟁하는 가설에 대한 추가적 사실의 차별적 지지 관계(강화 또는 약화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25. <사실 및 추정>에 비추어 두 가설을 평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사실 및 추정>

얼굴이나 음성의 인식 및 감정과 관련한 신경 체계는 다음처럼 작동한다. 대뇌 측두엽에는 얼굴과 사물의 인식에 특화된 영역이 존재한다. 이 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는 친밀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 측두엽에서 인식된 얼굴 정보는 감정 반응을 만드는 변연계로 보내진다. 변연계 입구인 편도가 인식된 정보의 감정적 의미를 먼저 분별하고, 이를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변연계의 감정중추로 중계한다. 음성 인식 영역에서 인식된 정보는 시각 정보와는 다른 경로로 편도에 도달하지만 편도 이후의 경로는 동일하다. 변연계 감정중추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비로소 분별된 감정 정보에 어울리는 친숙함, 사랑,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손바닥에 나는 땀을 이용하여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을 측정하는 GSR(피부전도반응) 시험에서, 정상인은 가족사진을 보면 높은 GSR을 보이지만 낯선 얼굴을 보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A가 사고 전과 달리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을 가짜라고 여기는 망상증을 보였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저 남자는 내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A가 부모 얼굴은 알아보지만 부모와 연관된 정서적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이들을 각각 평가해 보았다.

<가설 1> A의 증상은 시각 인식 영역과 편도 사이의 연결 경로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가설 2> A의 증상은 변연계 감정중추가 손상되어 감정 능력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 ① A가 오바마나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인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사실은 <가설 1>은 강화하고 <가설 2>는 약화한다.
- ② A가 부모 얼굴에 대한 GSR 시험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가설 1>은 약화하고 <가설 2>는 강화한다.
- ③ A가 농담에 웃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좌절이나 두려움 등의 정상적 감정을 보인다는 사실은 <가설 1>과 <가설 2> 모두를 약화한다.
- ④ A가 낯은 익지만 별다른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가설 1>은 약화하고 <가설 2>는 강화한다.
- ⑤ A가 부모와 전화로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부모를 가짜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상적인 친근감을 보인다는 사실은 <가설 1>은 강화하고 <가설 2>는 약화한다.

정답: ⑤

(10) 문제해결

2015학년도 33번 문항

저신뢰 사회로 알려진 국가가 국제 비교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일반적 신뢰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즉 역설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함.

33. ㉠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타인에 대한 신뢰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좁은 범위의 친숙하고 가까운 타인들에 대한 특수한 신뢰와 넓은 범위의 잘 알지 못하는 타인들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그것이다. 통상적으로 신뢰는 후자인 일반적 신뢰를 지칭한다. 사회학자들은 일반적 신뢰를 조사를 통해 측정해 왔다. 일반적 신뢰를 묻는 질문의 의도는 가깝고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멀고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존 설문조사는 일반적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한다.

한편, 사회학자 A는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서 나타나는 신뢰의 범위가 저신뢰 사회와 고신뢰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신뢰의 범위가 가족이나 잘 아는 친구에 머무는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는 아시아에 위치한 Z국처럼 연줄을 중시하고 특수한 관계에 기초한 좁은 범위의 신뢰만을 허용하는 문화는 저신뢰 사회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서구 선진국들처럼 보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넓은 범위의 신뢰가 지배적인 문화는 고신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제 비교 조사는 Z국의 일반적 신뢰 수준이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Z국의 일반적 신뢰 수준이 최상위권이라는 조사 결과와 Z국이 저신뢰 사회라는 주장을 어떻게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보 기〉

- ㄱ. Z국 사람들은 이동이 어려웠던 국토의 특성상 지역 단위 경제권을 발달시켜 살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출신 지인들만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 ㄴ. Z국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는 것을 꺼려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 ㄷ. Z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자신의 신뢰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⑤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자료집

발표 01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개선 방향

민 찬 흥 (한양대학교 교수)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개선 방향

민찬홍 (한양대학교 교수)

0.

이 발제가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1.

법학적성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일상어를 매체로 한 단순 정보의 파악부터 복잡한 논변의 비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상언어 처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인지 활동을 망라하는 편이다. 일상언어 처리 관련 인지 활동을 크게 주어진 (1) 언어적 정보를 수용하고 이해, 파악하는 능력, (2) 주어진 정보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 그리고 (3) 주어진 언어 정보 자료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크게 분류한 것이 현행 법학적성시험의 과목 구분의 기반이다. (2)의 ‘추리’와 (3)의 ‘비판’이 《추리논증》 과목이 검사하려는 능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는 언어적 정보의 수용 및 이해를 묻는 과목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종전의 《언어이해》 문항구성표가 보여주듯이 실제로 《언어이해》 시험은 위 세 능력 모두를 묻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 어휘력 및 (‘창의’라는 이름으로) 발산적 사고력까지 측정하고 있다.

내용 영역 \ 인지 활동 유형	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위 표에 나타난 인지활동 유형으로 ‘분석’이라 함은 제시문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분별, 파악, 접수하는 활동을, ‘추론’은 제시문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 즉 암묵적 전제나 가

정, 원칙, 결론, 관점 등을 추리해내는 활동을, ‘비판’은 제시문이 담고 있는 정보의 진위를 검토하거나, 제시문의 주장 내지 결론의 타당성 또는 설득력을 글쓴이가 제시한 또는 가정한 근거들에 비추어 검토하는 일을 포함하여 글쓴이가 사태를 보는 관점을 짚어내어 검토하는 등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분석’은 “지문 안에서 생각하기”이고, ‘추론’은 “지문으로부터 생각하기”라면 ‘비판’은 “지문에 대하여 생각하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해명의 핵심은, 위 표의 ‘추론’과 ‘비판’ 및 ‘창의’는 해당 능력을 묻되, 주어진 제시문의 심도 있는 이해와 관련이 있는 문항들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첫 시행 이후 《언어이해》에서 추리, 비판 문항, 특히 추리 문항들은 그러한 추리 문항을 묻기 위해 제시문을 제작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리 능력의 검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언어이해》 과목의 이러한 구성은 법학적성시험의 과목 구성 및 문항 개발을 연구하였던 2006년 당시 일상언어 기반의 인지 능력 검사와 관련한, 넓게는 우리 사회의 경험, 좁게는 국립교육평가원의 역량이 크게 작용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언어 기반의 인지 능력 검사에 관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찍 개발되어 출제 역량이 축적된 시험은 대입 수능 시험의 《언어》 영역 시험이었고, 그후 《공직적성시험(PSAT)》과 《의치의학입문검사》를 통하여 대학 졸업생 수준에서 일상 언어 기반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까지 개발되어 온 터였고, 이들 시험에서 위의 ‘추리’ 능력 및 ‘비판’ 능력 만을 묻는 시험은 없었고, ‘언어’ 시험은 관련된 모든 인지활동을 검사하는 문항들로 채워져 있었다.

법학적성시험의 과목을 설정하던 시기부터 있었던 《추리논증》 과목과 구별된 《언어이해》 과목의 문항 특징에 대한 열띤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제 현장에서 ‘언어’ 시험 출제의 관성은 방해 없이 작동하였고, 따라서 ‘언어’ 시험은 위의 모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제약 없이 제작, 출제해 왔다.

그 결과 그 첫 시행부터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이르기까지 《언어이해》 과목 문항 중에서 독해 능력을 묻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은 40%가 채 되지 않으며, 추리 능력을 묻는 것으로 분류될 문항이 40%가 넘고, 비판 및 창의 문항이 20%가 되지 않는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언어이해》 한 과목으로 일상언어 기반의 인지 능력을 모두 묻고 있으니, 《추리논증》 과목을 따로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물론, 《추리논증》 과목의 문항들을 보고 나면, 《언어이해》의 문항으로는 구성할 수 없는 문항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식의 의문은 곧 불식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능력을 《언어이해》에서 묻고 또 《추리논

증»에서 다시 묻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은 대답될 수 없으며, 실제로 이런 의문은 그 동안 시행되어 온 법학적성시험을 자세히 검토하면 합당하게 품게 되는 의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추리논증»이 «언어이해»와 차별화된 문항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던 데 반해 «언어이해»는 일상언어 관련 인지능력 시험의 ‘간판’ 과목으로서 그 중심을 굳게 지켜온 편이었다. 그러나, 협의회 연구진과 출제 교수진은, «언어이해» 과목의 문항들 편에서도 ‘추리’, ‘비판’ 능력보다는 ‘이해’력을 충실히 묻는 문항들을 더 개발하고 더 비중 있게 출제해야 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언어이해» 과목을 더 쉽게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문항의 난도를 조절하는 문제는 시험 구성의 타당성보다 우선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독해력의 측정은 현재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항들로 물어질 수 있다.

- (1) 제시문 전체의 이해
 - A. 제시문 전체의 내용 이해
 - B. 제시문 전체의 구조 이해
 - C. 글의 성격, 글쓴이의 관점/입장 파악
- (2) 중요 부분에 대한 이해
 - A. 내용의 이해
 - B. 구조적/수사적/의미론적 특성 이해

등, ‘이해’와 직접 관련된 인지 활동 능력들도 그 층위가 매우 넓고, 제시문에 따라서 타당성과 적절한 난도를 유지하면서 물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

2.

“개와 닭과 여우를 한 마리씩 데리고 있는 농부가 셋 중 한 마리만 같이 태울 수 있는 작은 배를타고 강을 건너려는데, 농부가 없으면 개는 여우를 공격하고, 여우는 닭을 공격하거든..”이라고 시작하는 수수께끼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닭을 태우고 개는 헤엄치게 해서 건너지.”라거나, “닭은 뱃전에서 활개를 치면 거의 안 태운 거나 마찬가지잖아.”라거나, “여우를 강 건너로 던지고,”라고 대꾸하는 것은 농담으로 간주되지 문제 해결로 간주되지 않는다. 엄격한 시험의 경우에도 문제를 제시하고 수험생들이 그것을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 때에는 출제자와 수험생 간에 문제의 가정들, 합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해결 방안의 조건들 등에 대한 암묵적 약속이 작동한다. 하나의 시험 과목은 대개, 명시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워도, 동일한 암묵적 약속들에 기반하는 문항들로 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추리논증》 과목의 경우, 초기에는 약속이 다른 두 종류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언어추리(verbal reasoning)’와 ‘분석과 재구성’ 영역으로 분류되는 문항 중 상당수는 《언어이해》와 비슷한 약속에 기반하고 있었고, ‘논리 게임’과 ‘수리 추리’ 등을 포함하는 다른 문항들을 제시문의 정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상이한 약속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추리논증 문항을 대하는 수험생들은 각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푸는 문제에 속하는지 먼저 판단하여야 했는데, 문항들 중에는 그 판단이 분명치 않아서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문항으로 간주하고 풀어가다가 그 문항이 전자에 속하는 문항이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고백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점은 아래의 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동안 《추리논증》 과목의 문항 설계의 지침으로 사용되었던 아래의 문항유형표는 “좋은 것은 단순하다”는 원칙의 생생한 증거이다.

추리의 내용 영역	인지 활동 유형	추리			논증			인지 활동 유형	
		언어 추리	수리 추리	논리 게임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논증의 내용 영역	
논리학·수학									
인문학								인문학	이론적 논변
사회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과학·기술	
								일상적·도덕적 논변	실천적 논변
								의사 결정	
								법적 논변	

《추리논증》 과목의 출제가 독립적인 두 문항구성표의 임시방편적인 결합처럼 보이는 위 표에 의해 진행되었던 것은 개발 당시 두 과목으로 개발하고자, 당시의 출제 역량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문항개발 연구팀이 새로운 시험 문제를 출발시키는 데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한 그릇에 넣고 버무리면 잘못이나 결손이 생기더라도 시끄럽게 드러내지 않고 문항 유형을 바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후, 법 관련 제재를 다루는 문항들을 대거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추리논증》은 문제 해결에 관하여 출제자와 수험생 간에 작동하는 암묵적 약속이 더 여러 가지로 증가하였다. 흔히 수험생들과 준비생들이 ‘언어이해 비슷한 문제’, ‘법 문제’, ‘추리 문제’, ‘논증 문제’ 등으로 부르는 분류가 그런 약속의 다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잘못이 없다.

내력이 어찌되었던 하나의 시험 과목 안에 이렇게 상이한 여러 약속들이 작동하는 문항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다는 것은 시험 과목 체제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법

학적성시험 시행의 초기에는 출제 역량과 새로운 시험의 도입 부담 등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용인되어 왔다고 하나, 이제 시험이 여러 해 시행을 거치면서 출제의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되었고, 협의회와 연구진과 출제 교수진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법학적성시험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시험 과목의 조정은 꼭 필요한 일이다.

3.

법학적성시험이 법 관련 제재를 늘리고 법적 추리 문항을 다수 포함하게 된 사안은 굳이 되풀이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추리논증》 과목에서 8~10문항 정도 포함되었던 법적 추리 문항들이 논리적인 성격을 볼 때, 일상언어 기반의 인지 활동 영역 전체에 걸쳐 있었다는 점이다. 대개 타당성이 인정되고 잘 구성된 문항들이었지만, 적어도 그 문항이 묻고 있는 인지 능력에 관련한 법적 추리 문항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모두 ‘추리’ 영역의 ‘언어추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이해에 가까운 것들도 많으며, 언어 이해에 가까운 문항들로 개발될 수 있는 것들로 말하자면 더 많고 (개발 가능성으로 말하면, 법적추리 문항들로 일상언어 기반 인지 활동의 모든 영역을 묻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논증의 분석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더러 있으나 반론 및 비판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항들이 이른바 ‘법적 추리’의 전형적인 유형이랄 수 있는 ‘추리’ 영역의 ‘적용’ 문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으로, 법학 지식은 묻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에서 법 관련 제시문과 법적 추리 문항들은 모두 출제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환골탈태를 거쳐서 법학을 접하지 않은 사람도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니와, 더구나 (1) 예컨대 군사학에 매우 밝은 사람은 군사학에 관한 글을 다루면서는 논리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보다 더 예리한 논리적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철학에 관한 글을 다루게 되면 거의 초등 수준의 사고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추리력이나 비판적 능력 같은 사고 능력이 내용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 (2) 적어도 당분간 법학 계통의 경력을 지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학 학부의 훈련에 익숙하면서 순수한 사고력 시험은 매우 당혹스러워 한다는 현실에서 그들 중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험 출제 기관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라면, 법적 추리 문항을 《추리》 과목에 편입시키는 것보다 독립적인 과목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어떨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자료집

발표 02

현행 법학적성시험과 그 개선안에 관한 설문분석

김재철 (한남대학교 교수)

현행 법학적성시험과 그 개선안에 관한 설문분석

김 재 철 (한남대학교 교수)

I. 연구의 필요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일곱 번의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해 왔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적격성을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전 분야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람이 치를 수 있는 시험이다. 지식을 묻는 성취도 평가 시험이 아니라 분석력,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해당년도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로 규정되어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

시험과목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와 시험 시간 및 문항의 형식은 <표 1>과 같다.

<표 1> 시험과목별 문항 수, 시험시간, 1문항 당 시험시간, 문항의 형식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1문항 당 시험시간	문항의 형식
언어이해	35	80분	약 2.3분(약 2분 17초)	5지 선다형
추리논증	35	110분	약 3.1분(약 3분 8초)	5지 선다형
논술	2	120분	60분	서답형
전체	72	310분		

시험과목별 내용영역과 인지활동 유형은 살펴보면, 먼저, 언어이해의 경우, 내용영역은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5개 분야이고, 인지활동 유형은 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추리논증은 크게 추리와 논증으로 구분되어 있다. 추리의 경우, 내용영역은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3개 분야이고, 인지활동 유형은 언어추리, 수리추리, 논리게임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논증의 경우, 내용영역으로는 논리학·수학, 일상적·도덕적 논변, 의사결정, 법적 논변 등 4개 분야이고, 인지활동 유형은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로 구성된다.

그러나 법학적성시험의 시험과목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로 구분하게 된 것은 사고활동에 대한 이론적 원리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출제와 관련된 현실적 여건에 비중을 준 결정이었다. 인지활동 유형에 초점을 둔다면, 현재 시행 중인 법학적성시험의 세 가지 시험과목은 독해, 추리, 비판, 글쓰기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네 가지 사고활동도 비록 조금씩은 중첩되어 작동한다고 볼 수 있지만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되는 사고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로 구분하기보다는 독해, 추리, 비판, 논술 네 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추리논증 과목에는 압축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추리 문항과 이러한 추리과정을 담고 있는 논증을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판 문항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추리 문항은 대체로 연역적 추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기 때문에 수험생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만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풀이에 임해야 한다. 반면 비판 문항은 대체로 귀납 논증에 대한 비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은 문항에 직접 제시된 조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배경 지식을 동원해야 한다. 이상의 논지에 따르면, 현행 법학적성시험에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과목은, 독해와 추리 및 비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학적성시험의 과목을 현행 세 과목에서 네 과목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인지활동 유형의 중복으로 인한 세 개 과목 간의 모호한 경계선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과목별 평가목표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법학교육의 적성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판 능력을 좀 더 비중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현재 시험제도 하에서는 추리와 비판을 같은 시간에 배정함으로써 비판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추리 영역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면 추리논증 과목 점수에서 불이익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과목을 분리하게 된다면 비판 영역의 점수를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전형요소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세 과목에서 네 개 과목으로 구분한다면, 과목별 문항 수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출제기간 단축과, 출제진의

출제 부담 완화 및 전문화를 가져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문항의 질 제고와 더불어 문항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과목별 문항 수가 감소하면 점수 분포가 정규분포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칫 과목별로 극단한 T점수가 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언어이해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추리논증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론적 배경과 경험적인 연구결과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2〉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여러 번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법학적성시험 개선안의 시험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요약한 것이다. 현행 법학적성시험과 비교할 때 개선안은 전체 시험시간과 문항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동소이하다. 다만, 언어이해가 독해로 변경되면서 문항 수는 25문항으로 줄어든 반면 문항 당 시험시간은 약 31초 늘었다는 점, 추리논증이 추리와 비판으로 분리되었다는 점, 추리와 비판의 문항 수를 각각 25문항으로 하면서 문항 당 시험시간은 추리의 경우 44초 줄어들었지만, 비판의 경우 오히려 4초 정도 늘었다는 점, 논술은 전체 시험시간이 20분 줄어들었다는 점 등이 달라졌다.

〈표 2〉 개선안의 시험과목별 문항 수, 시험시간, 1문항 당 시험시간, 문항의 형식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1문항 당 시험시간	문항의 형식
독해	25	70분	2.8분(약 2분 48초)	5지 선다형
추리	25	60분	2.4분(약 2분 24초)	5지 선다형
비판	25	80분	3.2분(3분 12초)	5지 선다형
논술	2	100분	50분	논술형
전체	77	310분		

개선안의 시험과목별 내용영역과 인지활동 유형은 살펴보면, 먼저, 독해의 경우, 내용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윤리·규범 등 4개 분야이고, 인지활동 유형은 주제 요지 구조 파악, 의도 관점 입장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둘째, 추리의 경우, 내용영역은 논리학·수학, 인문, 사회, 과학기술, 윤리·규범 등 5개 분야이고, 인지활동 유형은 일상 언어 추리(함축 및 귀결, 원리적용, 사실관계추리)와 모형 추리(형식적 추리, 논리 게임, 수리 추리)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비판의 경우, 내용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윤리·규범 등 4개 분야이고, 인지활동 유형은 논증분석(명시적 요소 분석, 암묵적 요소 분석, 구조 분석), 논쟁 및 반론(논쟁 분석 및 평가, 반론 구성, 오류), 평가 및 문제해결(연역 논증 평가, 귀납 논증 평가, 강화 또는 약화, 문제해결)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법학적성시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험을 실제로 치른 경험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리고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법학적성시험을 실제로 치른 경험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이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상으로 현행 법학적성시험과 그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 1,048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명 총 1,066명을 단계적 표집방법으로 표집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628명, 여자 438명이었고, 연령별로는 30세 이하 788명, 31세~40세 이하 248명, 41세 이상 3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67명, 비수도권이 375명이었고, 학부 전공은 법학 448명, 비법학 618명, 종사업무는 법학전문대학원생 1,048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명이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학적성시험의 과목별 문항 수, 시험 시간, 문항의 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적성시험 성적 반영방법에 관한 의견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개선 법학적성시험의 시험 과목,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이수율과 법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배경 지식, 논술 시험 채점 방안, 법학적성시험 시행 방안, 시험지 크기 등에 관한 의견을 분석하는 것이다.

3. 분석방법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문항별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및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현행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의견

현행 법학적성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세 과목인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수 능력과 법률 전문가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표 3>과 같이, 언어이해가 42.6%, 추리논증이 36.5%, 논술이 20.9%의 중요도가 있다고 답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경우, 학생들에 비해 추리논증과 논술의 중요성을 조금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수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과목별 중요도(백분율)

배경변수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합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42.6	36.6	20.8	100.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9.2	35.3	25.5	100.0
소계	42.6	36.5	20.9	100.0

현행 법학적성시험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본 결과는 <표 4>~<표 9>와 같았다. 문항 수에 대해서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모두 ‘적절하다’는 의견이 64.2%와 54.9%로 가장 많았다. 문항 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중에는 언어이해(22.8%), 추리논증(34.4%) 모두 ‘많다’는 의견이 ‘적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논술의 경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81.3%로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시험시간에 대해서는 언어이해의 경우, ‘적절하다’가 46.3%로 가장 많았지만, ‘조금 짧다’는 의견도 37.3%로 많은 편이었다. 특히 추리논증의 경우, ‘적절하다’와 ‘조금 짧다’가 각각 39.1%, 39.2%로 가장 많았고, ‘너무 짧다’는 의견도 15.6%로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해 논술의 경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다.

〈표 4〉 현행 언어이해의 문항 수

() : 백분율

배경변수	너무 많다	조금 많다	적절하다	조금 적다	너무 적다	합계	χ^2
연령 30세 이하	40 (5.1)	126 (16.0)	522 (66.3)	65 (8.3)	34 (4.3)	787 (100.0)	20,175**
연령 31~40세	15 (6.0)	48 (19.4)	149 (60.1)	21 (8.5)	15 (6.0)	248 (100.0)	
연령 41세 이상	6 (20.0)	8 (26.7)	13 (43.3)	3 (10.0)	0 (.0)	30 (100.0)	
지역 수도권	26 (3.9)	100 (15.0)	450 (67.5)	56 (8.4)	35 (5.2)	667 (100.0)	19,209**
지역 비수도권	34 (9.1)	76 (20.3)	220 (58.8)	30 (8.0)	14 (3.7)	374 (100.0)	
학부 전공 법학	29 (6.5)	97 (21.7)	271 (60.5)	36 (8.0)	15 (3.3)	448 (100.0)	14,582**
학부 전공 비법학	32 (5.2)	85 (13.8)	413 (66.9)	53 (8.6)	34 (5.5)	617 (100.0)	
종사 업무 법전원 학생	57 (5.4)	176 (16.8)	678 (64.8)	87 (8.3)	49 (4.7)	1047 (100.0)	15,253**
종사 업무 법전원 교수	4 (22.2)	6 (33.3)	6 (33.3)	2 (11.1)	0 (.0)	18 (100.0)	
소계	61 (5.7)	182 (17.1)	684 (64.2)	89 (8.4)	49 (4.6)	1065 (100.0)	

**p<.01

〈표 5〉 현행 추리논증의 문항 수

() : 백분율

배경변수	너무 많다	조금 많다	적절하다	조금 적다	너무 적다	합계	χ^2
성별 남자	52 (8.3)	152 (24.2)	346 (55.1)	42 (6.7)	36 (5.7)	628 (100.0)	12,630*
성별 여자	42 (9.6)	121 (27.6)	239 (54.6)	29 (6.6)	7 (1.6)	438 (100.0)	
지역 수도권	43 (6.4)	158 (23.7)	389 (58.3)	47 (7.0)	30 (4.5)	667 (100.0)	21,582**
지역 비수도권	50 (13.3)	110 (29.3)	179 (47.7)	23 (6.1)	13 (3.5)	375 (100.0)	
학부 전공 법학	50 (11.2)	133 (29.7)	228 (50.9)	23 (5.1)	14 (3.1)	448 (100.0)	16,349**
학부 전공 비법학	44 (7.1)	140 (22.7)	357 (57.8)	48 (7.8)	29 (4.7)	618 (100.0)	
소계	94 (8.8)	273 (25.6)	585 (54.9)	71 (6.7)	43 (4.0)	1066 (100.0)	

*p<.05

**p<.01

〈표 6〉 현행 논술의 문항 수

() : 백분율

배경변수	많다	적절하다	적다	합계	χ^2
연령 30세 이하	62 (7.9)	653 (82.9)	73 (9.3)	788 (100.0)	12,496*
연령 31~40세	28 (11.3)	196 (79.0)	24 (9.7)	248 (100.0)	
연령 41세 이상	5 (16.7)	18 (60.0)	7 (23.3)	30 (100.0)	
종사 업무 법전원 학생	92 (8.8)	857 (81.8)	99 (9.4)	1048 (100.0)	8,826*
종사 업무 법전원 교수	3 (16.7)	10 (55.6)	5 (27.8)	18 (100.0)	
소계	95 (8.9)	867 (81.3)	104 (9.8)	1066 (100.0)	

*p<.05

**p<.01

〈표 7〉 현행 언어이해의 시험 시간

() : 백분율

너무 짧다	조금 짧다	적절하다	조금 길다	너무 길다	합계
106 (10.1)	391 (37.3)	485 (46.3)	46 (4.4)	19 (1.8)	1047 (100.0)

〈표 8〉 현행 추리논증의 시험 시간

() : 백분율

배경변수	너무 짧다	조금 짧다	적절하다	조금 길다	너무 길다	합계	χ^2
학부	83 (19.2)	179 (41.4)	153 (35.4)	11 (2.5)	6 (1.4)	432 (100.0)	15.557**
전공	80 (13.0)	232 (37.7)	257 (41.7)	32 (5.2)	15 (2.4)	616 (100.0)	
소계	163 (15.6)	411 (39.2)	410 (39.1)	43 (4.1)	21 (2.0)	1048 (100.0)	

*p<.05 **p<.01

〈표 9〉 현행 논술의 시험 시간

() : 백분율

배경변수	너무 짧다	조금 짧다	적절하다	조금 길다	너무 길다	합계	χ^2	
연령	30세 이하	25 (3.2)	97 (12.3)	510 (64.7)	101 (12.8)	55 (7.0)	788 (100.0)	23.342**
	31~40세	15 (6.1)	42 (17.1)	167 (67.9)	15 (6.1)	7 (2.8)	246 (100.0)	
	41세 이상	1 (7.1)	1 (7.1)	9 (64.3)	3 (21.4)	0 (.0)	14 (100.0)	
지역	수도권	14 (2.1)	72 (10.9)	434 (65.8)	89 (13.5)	51 (7.7)	660 (100.0)	38.428**
	비수도권	26 (7.1)	63 (17.3)	236 (64.8)	29 (8.0)	10 (2.7)	364 (100.0)	
	소계	41 (3.9)	140 (13.4)	686 (65.5)	119 (11.4)	62 (5.9)	1048 (100.0)	

*p<.05 **p<.01

현행 법학적성시험 세 과목 중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과목이 무엇인지 물어 본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추리논증이 50.5%로 가장 많았고, 논술이 32.2%, 언어이해가 27.3%로 그 뒤를 따랐다. 이와 반대로 만족스러운 과목이 무엇인지 물어 본 결과, 〈표 11〉에서와 같이 언어이해가 48.2%로 가장 많았고, 추리논증이 34.6%, 논술이 28.7%로 그 뒤를 따랐다.

〈표 10〉 현행 각 시험 과목 중 만족스럽지 못한 과목(중복 표시 가능)

() : 백분율

배경변수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합계	
학부	법학	107 (27.7)	223 (57.8)	102 (26.4)	386 (100.0)
전공	비법학	132 (26.9)	220 (44.8)	180 (36.7)	491 (100.0)
종사	법전원 학생	233 (27.0)	436 (50.5)	280 (32.4)	863 (100.0)
업무	법전원 교수	6 (42.9)	7 (50.0)	2 (14.3)	14 (100.0)
	소계	239 (27.3)	443 (50.5)	282 (32.2)	877 (100.0)

〈표 11〉 현행 각 시험 과목 중 만족스러운 과목(중복 표시 가능)

() : 백분율

배경변수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합계	
학부	법학	189 (49.7)	97 (25.5)	128 (33.7)	380 (100.0)
전공	비법학	240 (47.1)	211 (41.4)	127 (24.9)	510 (100.0)
종사	법전원 학생	426 (48.5)	304 (34.6)	249 (28.4)	878 (100.0)
업무	법전원 교수	3 (25.0)	4 (33.3)	6 (50.0)	12 (100.0)
	소계	429 (48.2)	308 (34.6)	255 (28.7)	890 (100.0)

추리논증 과목이 두 종류의 문항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 시험을 치를 때 문항 풀이에 혼란이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물어본 결과, 〈표 12〉와 같이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이 67.7%로 더 높았다.

〈표 12〉 추리논증에 두 종류의 문항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한 혼란이나 어려움

() : 백분율

배경변수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었다	혼란이나 어려움이 있었다	합계	χ^2	
지역	수도권	471 (72.4)	180 (27.6)	651 (100.0)	17.418**
	비수도권	208 (59.4)	142 (40.6)	350 (100.0)	
학부	법학	260 (61.5)	163 (38.5)	423 (100.0)	12.833**
	전공	비법학	434 (72.1)	168 (27.9)	
	소계	694 (67.7)	331 (32.3)	1025 (100.0)	

**p<.01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두 과목의 점수 반영 비율을 물어 본 결과, 언어이해를 100으로 할 때 추리논증의 비중은 평균 105(표준편차 41.3)로써 거의 유사한 가중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입학 전형에서 논술 과목의 성적 반영 방법을 물어본 결과, <표 13>에서와 같이, 등급별 점수로 반영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세세한 점수로 반영하는 경우와 통과/과락의 형식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각각 22.2%로 그 뒤를 따랐다.

<표 13> 논술의 반영 방식

() : 백분율

세세한 점수로써 반영하고 있음		등급별 점수로써 반영하고 있음		통과(pass)/과락(fail)의 형식으로 반영하고 있음		어떠한 형식으로도 반영하고 있지 않음		합계	
4	(22.2)	9	(50.0)	4	(22.2)	1	(5.6)	18	(100.0)

2. 개선안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의견

법학적성시험의 과목을 현행 세 과목(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에서 개선안의 네 과목(독해, 추리, 비판, 논술)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본 결과, <표 14>,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8%가 개선안에 대해 동의한 반면 58.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행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 문항 수를 조절하는 방안이 더 낫다(61.1%)’, ‘현행 과목의 수와 문항 수 모두 적절하다(30.6%)’ 등을 들었다.

<표 14> 네 과목으로의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

() : 백분율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합계
613 (58.2)	440 (41.8)	1053 (100.0)

<표 15> 네 과목으로의 개선안에 반대하는 이유

() : 백분율

배경변수		현행 과목의 수와 문항 수 모두 적절하다	현행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 문항 수를 조절하는 방안이 더 낫다	기타	합계	χ^2
성별	남자	100 (34.0)	167 (56.8)	27 (9.2)	294 (100.0)	7.819*
	여자	46 (25.1)	127 (69.4)	10 (5.5)	183 (100.0)	
학부 전공	법학	56 (27.6)	123 (60.6)	24 (11.8)	203 (100.0)	8.648*
	비법학	90 (32.8)	171 (62.4)	13 (4.7)	274 (100.0)	
	소계	146 (30.6)	294 (61.6)	37 (7.8)	477 (100.0)	

*p<.05

개선안에서 법학적성시험의 과목별 문항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본 결과는 <표 16>과 같았다. 먼저, 독해는 ‘적절하다’가 66.1%로 가장 많았고, ‘너무 적다’는 의견이 27.5%로 그 뒤를 따랐다. 둘째, 추리는 ‘적절하다’가 67.7%로 가장 많았고, ‘너무 적다’와 ‘너무 많다’가 각각 18.6%와 13.8%로 그 뒤를 따랐다. 셋째, 비판도 ‘적절하다’가 72.2%로 가장 많았고, ‘너무 적다’와 ‘너무 많다’가 각각 15.6%와 12.4%로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비해 논술의 경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82.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항 수가 ‘너무 많다’ 또는 ‘너무 적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문항 수를 물어보니, 독해는 31.4문항(표준편차 8.5), 추리는 27.8문항(표준편차 10.4), 비판은 28문항(표준편차 10.6)이라고 답하였다.

<표 16> 개선안의 과목별 문항 수의 적절성과 적절 문항 수

() : 백분율 [] : 표준편차

과목	너무 많다	적절하다	너무 적다	합계	적절 문항 수
독해	28 (6.4)	289 (66.1)	120 (27.5)	437 (100.0)	31.4[8.5]
추리	60 (13.8)	295 (67.7)	81 (18.6)	436 (100.0)	27.8[10.4]
비판	54 (12.4)	315 (72.1)	68 (15.6)	437 (100.0)	28.0[10.6]
논술	29 (6.7)	356 (82.0)	49 (11.3)	434 (100.0)	-

개선안에서 법학적성시험의 과목별 문항 당 시험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본 결과는 <표 17>, <표 18>과 같았다. 먼저, 독해는 ‘적절하다’가 54.9%로 가장 많았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33.7%로 그 뒤를 따랐다. 둘째, 추리는 ‘부족하다’가 51.2%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가 44.9%로 그 뒤를 따랐다. 셋째, 비판은 ‘적절하다’가 67.1%로 가장 많았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22.8%로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비해 논술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75.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17> 개선안의 과목별 문항 당 시험시간의 적절성

() : 백분율

과목	매우 짧다	조금 짧다	적절하다	조금 길다	매우 길다	합계
독해	21 (4.9)	124 (28.8)	236 (54.9)	39 (9.1)	10 (2.3)	430 (100.0)
추리	40 (9.3)	180 (41.7)	194 (44.9)	13 (3.0)	5 (1.2)	432 (100.0)
비판	18 (4.2)	80 (18.6)	289 (67.1)	33 (7.7)	11 (2.6)	431 (100.0)

〈표 18〉 개선안 논술의 문항 당 시험시간

() : 백분율

짧다	적절하다	길다	합계
80 (18.5)	324 (75.0)	28 (6.5)	432 (100.0)

개선안에서 법학적성시험의 시험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70.8%)이 긍정적인 의견(29.2%)에 비해 많았다(〈표 19〉). 가중치를 둔다면, 독해를 100으로 했을 때, 추리는 115.0, 비판은 123.4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표 19〉 성적 반영 시, 독해를 100으로 하였을 때 추리와 독해 과목의 가중치

과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추리	127	115.0	42.0
비판	127	123.4	48.7

법학을 제외한 17개 학문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이수과 법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문을 순위별로 나열한다면, 규범학 92.6%, 윤리학 90.8%, 정치·외교·행정 89.7%, 사회학 89.2%, 철학 86.4% 등이었다. 이에 비해 지구과학 23.6%, 물리학 27.6%, 지리학 31.3%, 생명과학 36.7%, 공학 39.6% 등은 필요하다는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이수과 법조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학문별 필요성

분야	학문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합계
인문	철학	25 (4.4)	52 (9.2)	307 (54.0)	184 (32.4)	568 (100.0)
	심리학	41 (7.2)	136 (24.0)	307 (54.2)	82 (14.5)	566 (100.0)
	사학	46 (8.2)	183 (32.5)	286 (50.8)	48 (8.5)	563 (100.0)
	언어학	32 (5.7)	111 (19.7)	311 (55.1)	110 (19.5)	564 (100.0)
	문학·예술	83 (14.8)	219 (39.1)	227 (40.5)	31 (5.5)	560 (100.0)
사회	사회학	20 (3.5)	41 (7.3)	317 (56.1)	187 (33.1)	565 (100.0)
	경제·경영	30 (5.3)	82 (14.5)	346 (61.1)	108 (19.1)	566 (100.0)
	정치·외교·행정	21 (3.7)	37 (6.5)	320 (56.6)	187 (33.1)	565 (100.0)
	지리학	130 (23.2)	255 (45.5)	160 (28.6)	15 (2.7)	560 (100.0)
	인류학·문화학	61 (10.8)	178 (31.6)	277 (49.2)	47 (8.3)	563 (100.0)

분야	학문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합계
과학 기술	수학	95 (16.8)	215 (38.1)	230 (40.7)	25 (4.4)	565 (100.0)
	물리학	137 (24.2)	272 (48.1)	145 (25.7)	11 (1.9)	565 (100.0)
	생명과학	119 (21.1)	238 (42.2)	187 (33.2)	20 (3.5)	564 (100.0)
	지구과학	151 (26.7)	281 (49.7)	127 (22.5)	6 (1.1)	565 (100.0)
	공학	113 (20.1)	226 (40.2)	202 (35.9)	21 (3.7)	562 (100.0)
윤리· 규범	윤리학	18 (3.2)	34 (6.0)	258 (45.4)	258 (45.4)	568 (100.0)
	규범학	18 (3.2)	24 (4.2)	263 (46.3)	263 (46.3)	568 (100.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상으로 논술 채점방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물어 본 결과, ‘현행대로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자는 의견이 66.7%로 가장 높았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체 채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일괄 채점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채점을 의뢰’하자는 의견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일괄 채점’하자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표 21〉).

〈표 21〉 논술 시험 채점 방식

() : 백분율

현행대로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체 채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일괄 채점 회 일괄 채점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체 채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일괄 채점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채점을 의뢰	합계
8 (66.7)	1 (8.3)	3 (25.0)	12 (100.0)

법학적성시험을 1년에 몇 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본 결과, 2회가 52.8%로 가장 많았고, 1회가 38.3%로 그 뒤를 따랐다(〈표 22〉).

〈표 22〉 법학적성시험의 매년 시행 적정 횟수

() : 백분율

1회	2회	3회	기타	합계
230 (38.3)	317 (52.8)	51 (8.5)	2 (.3)	600 (100.0)

현재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하는 장소는 9개 지구 15개 대학이다. 이에 대한 적절성을 물어 본 결과, ‘적절하다’가 57.7%로 가장 많았지만, ‘시험장의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도 42.0%로 높은 편이었다(〈표 23〉). 시험지 크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행 방법인 ‘A3가 적

정하다'는 의견이 6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24〉).

〈표 23〉 현행 법학적성시험의 시험장 수

() : 백분율

적절하다	시험장의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시험장의 수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	합계
345 (57.7)	251 (42.0)	2 (.3)	598 (100.0)

〈표 24〉 법학적성시험의 적정 시험지 크기

() : 백분율

A3	A4	합계
391 (66.6)	196 (33.4)	587 (100.0)

IV. 결 론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세 과목 체제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학적성시험은 인지활동 유형의 중복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독해, 추리, 비판, 논술의 네 과목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수립한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현행 법학적성시험에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의 문항 수와 문항별 시험시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문항 수가 다소 많고 시험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다.

둘째, 예언타당도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법학적성시험에서 추리논증이 언어이해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문항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도 추리논증이 언어이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법학적성시험에서 추리논증은 두 가지 구인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한 수험생 입장에서의 혼란이나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언타당도와 문항 만족도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행 과목을 유지하면서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 문항 수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행 추리논증의 검사시간이 110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목을 나누는 방안

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법학적성시험 개선안에서 제안한 과목별 문항 수와 문항별 시험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문항 수에 있어서는 독해, 추리, 비판 세 과목 모두에 대하여 대다수의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나, 문항별 시험시간에 대해서는 세 과목 모두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 추리 과목의 경우에 문항별 시험시간을 조금 더 늘리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섯째, 법학을 제외한 17개 학문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이수와 법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문을 순위별로 나열한다면, 규범학, 윤리학, 정치·외교·행정, 사회학, 철학 등이었다. 이에 비해 지구과학, 물리학, 지리학, 생명과학, 공학 등은 필요하다는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논술 과목의 경우, 현행 방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입학전형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점기준과 채점방법 개선을 통해 실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더불어 다음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개선안에서 추리논증이 추리와 비판으로 분리됨으로써 법학적성시험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와 경험적인 결과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추리와 비판을 분리하여 출제하고 시험을 치루도록 하되 과목별 점수는 합산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과목별 문항 수가 줄어들음으로써 정규분포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과목별로 극단한 T점수가 산출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등배점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경우, 설문 대상자가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생에 제한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대학 교수, 법조인, 로스쿨 관련 행정관료,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 등의 의견이 고르게 수렴될 수 있도록 설문대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자료집

발표 03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현 소 혜 (성균관대학교 교수)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현 소 혜 (성균관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면서: 법학적성시험 무용론의 근거

법조계 주변에는 ‘법학적성시험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집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이다.

수험생들이 법학적성시험 무용론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그것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더라는 수험생들의 경험담이 인터넷이나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마치 법학적성시험은 오로지 시험 당일의 운이나 컨디션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지능검사 정도로 폄하되는 경우가 많다.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응시했는데 뜻밖의 고득점을 하였다든 몇몇 수험생들의 무용담은 이런 인식을 확산시킨다.

반면 교원들이 법학적성시험 무용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그것이 학생들의 법학 실력을 담보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창기에 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으나, 정작 법학적성시험의 표준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 성적 내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비례하지 않더라는 통계 결과 등이 암암리에 유포되면서 법학적성시험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교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 몇몇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근 법학적성시험의 반영비율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오로지 ‘법조인’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오랜 시절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해 온 응시생들로서는,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고자 노력해도 그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시험에 의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현행법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완벽하게 봉쇄된다.)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훨씬 적은 노력을 들인 경쟁자가 손쉽게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후

정작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낙오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성실성이 결과를 담보하는 시험이었다면 경쟁자의 자리에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리고 그 성실성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이루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법학적성시험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가 좌우되는 것에 대한 지독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학적성시험은 정말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무익한 제도인가. 본 발표문은 법조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과 법학적성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유용함을 논증하는 한편(II.), 응시생과 선발자 모두가 그 유용성을 납득하고 법학적성시험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삼도록 유인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을 개선하는 방안(III.)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II. 법학적성시험의 유용성

1.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자질

전통적인 송무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인은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업무를 진행한다. ① 의뢰인과의 상담, ② 사실관계의 파악, ③ 관련 법규의 확인, ④ 법률의 해석, ⑤ 사실의 법률에의 포섭, ⑥ 법문서 작성, ⑦ 소송 과정에서의 공격과 방어, ⑧ 판결에 대한 상소.

각 단계별로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매우 다양하게 등장한다. ①과 ②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배경지식과 인간의 심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기술 내지 의사소통능력 등이 요구되는 반면, ③과 ④의 단계에서는 광대하고도 정확한 법률지식과 논리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⑤ 단계에서는 주어진 사실과 법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추론능력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추론의 결과가 상대방과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의 수임 여부 및 변론 방향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비판적 사고 및 윤리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⑥ 단계에서는 원하는 소송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관 앞에 가져갈 사실들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서술하는 서면작성능력이, ⑦ 단계에서는 법정에 현출된 사실들을 전제로 자신이 행한 법해석 및 법적용이 정당함을 법관과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논변능력이 필요하고, ⑧ 단계에서는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이나 근거, 숨겨진 전제와 맥락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 내지 반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형 로펌이나 기업 내에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인은 ⑥ 내지 ⑧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의뢰인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설득하고 때로는 경영의 논리에 반박해야 한다는 점에서 송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① 내지 ⑤에 해당하는 자질은 물론 서면작성능력 및 논변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행정부나 입법부로 진출하여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게 될 법조인은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기존의 법체계의 내용과 현행법을 당해 사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지 또는 법해석의 영역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최종적으로 내려진 정책결정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송무 변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②, ③, ④, ⑤ 및 ⑦ 단계의 능력을 보다 넓은 단위에서 발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어느 직역으로 진출하건 간에 모든 법조인은 첫째, 법과 인간사 전반에 대한 이해, 둘째, 추상화된 규범을 구체적 사실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분석 및 추론 능력, 셋째, 분석 및 추론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및 윤리의식, 넷째, 설득 및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셈이다.

2.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목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조인은 세부적인 법률지식부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이해까지를 모두 갖추고, 당해 사건의 승소부터 사회정의의 실현까지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기 위해 글과 말로써 모든 이해당사자와 법관을 설득하는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법과대학은 학생들에게, 한편으로 소장 작성과 같은 법의 기술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가르쳐 익히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삶의 여러 가지 주름과 고비를 잘 알고서 인생의 고난에 현명한 조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야만 그 임무를 다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인간이 어떠한 인간을 가르치기에, 단지 4년 동안의 교육으로 그러한 기술자에다가 또한 현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는 한 전직 대법관의 진술은, 위와 같은 자질을 갖춘 법조인 양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교원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수

학연한이 4년에서 3년으로 감축되기는 하였지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현인’이 자 ‘기술자’로 변신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인’들을 선발하여 ‘기술자’로 만드는 직업 교육이 여러 모로 간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목표는 분명하다. 첫째, 현인(또는 현인에 최대한 근접한 자)을 선발할 것. 둘째, 3년 안에 숙련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할 것.

이 중 선발대상자가 현인인지 여부는 계량적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성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의 여태까지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와 각종의 증빙서류, 그간 쌓아온 인생이력의 총체를 짧은 시간 안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면접 등이 주된 판단자료가 된다. 수험생들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으며, 서류의 위조나 과장 등 거짓이 개입되지 않는 한 자신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경쟁 수험자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문제는 선발 대상자가 3년 안에 숙련 기술자가 될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에 있다. 과거 사법시험은 ‘현인’을 뽑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기술자’를 선별하는데 시험의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의 출제와 결과 판정이 매우 간이하였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법학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을 활용할 수 없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2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의 고유한 기능이므로, 이미 기술을 갖춘 자를 선발하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의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수험생이 그 동안 이룩한 학업성취도가 아니라, 장래 그가 이룰 수 있는 잠재력 내지 가능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현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엄정한 학사관리 및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시험 제도 등을 통해 매 학기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법조인력 수급 조절의 문제, 과거 대학의 입학정원제 실패의 경험, 고액의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반발 등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방안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수험생 중 일부를 선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의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술자가 될만한 자질을 계량화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도록 하자.

3. 법학적성시험의 기능

법조인이 되기 위한 자질 중 기술자로서의 자질은 특히 1. 중 ③ 내지 ⑦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는데 필요한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성실성, 논리적 사고능력 및 표현능력이다.

성실성의 덕목은 무엇보다 ③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법학은 다루는 양이 방대하고, 끊임 없이 변화하는 법규정과 판례에 관한 지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정의 숙지를 위한 성실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논리적 사고능력은 ④, ⑤, ⑦, ⑧의 업무와 관련이 깊다. 법조인은 주어진 사실관계와 법조문을 근거로 올바른 결론을 추론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관의 추론에 반박하고, 때로는 원하는 추론을 끌어내기 위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표현능력은 ⑥ 및 ⑦의 활동에서 사용된다.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지 않은 사실은 법관이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늘 당사자에게 필요한 주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변호사가 모든 사실을 장황하게 진술한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현출되어 의뢰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늘 간결하고 명확하게 필요한 사실만을 서면 또는 구술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성실성은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반면, 논리적 사고능력이나 표현능력 등은 법학적성시험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른바 ‘지성’ 면접을 통해서도 이러한 능력의 평가를 시도하고 있지만, 면접은 수험생 1인당 10분 내지 20분밖에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위원의 개인적인 자질과 취향, 동일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집단의 구성, 주관적 판단 기준 등으로 인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령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법학지식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금지된 이상 법학적성시험은 논리적 사고능력 및 표현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요컨대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 중 특히 ④, ⑤, ⑥, ⑦, ⑧과 관련된 기본소양(특히 논리적 사고능력과 표현능력)을 수험생이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며, 현재의 법학적성시험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논리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가령 논리적 사고능력은 다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사고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누어지는데, 법학적성시험 중 추리논증 영역은 주로 첫 번째 능력을, 언어이해 영역은 두 번째 능력을 평가한다. 추리논증 영역 중 ① 분석 및 재구성 유형

은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를 분석하여 그 중 다투지 않을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소송역량을 배분하는 능력이나 상대방이 숨겨 놓은 전제를 찾아내어 논박하는 능력과, ② 비판 및 반론 유형은 다투기로 한 부분에 대해 반박근거를 만들어 내거나 절충안을 마련하는 능력과, ③ 판단 및 평가 유형은 상대방의 주장이 갖는 설득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각종의 공격능력과 관련이 있다. 언어이해 영역 역시 법조인이 필수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각종의 법조문, 판례, 법학서적을 이해하고 그 조직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분석), 의뢰인이 제출한 각종의 자료를 읽고 그로부터 승소에 필요한 사실들을 추론해 내거나(추론), 상대방의 서면을 읽고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비판) 등을 측정하는 문제들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논술 영역이 서면작성능력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III. 법학적성시험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의 연계

1. 법학적성시험의 한계

다시 모두(冒頭)에서 제기하였던 법학적성시험 무용론으로 돌아가보자. 먼저 수험생들은 법학적성시험이 투자한 노력에 비례하는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성실성과 무관한 시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실성을 측정하는 것은 본래 법학적성시험 고유의 기능이 아니다. 법학적성시험은 그야말로 법조인으로서의 잠재적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하며, 성실성에 대해서는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등과 같은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완성된 기술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얼마나 성실하였는가는 절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장래 완성된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할 뿐이다.

그렇다면 법학적성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기만 하면 장래 우수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 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원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II.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법학적성시험의 구성은 분명 장래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적성시험이 정작 법학적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관계가 있다. 향을 바꾸어 살펴본다.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내용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술자가 될 만한 현인을 선발하여 기술자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주로 1. 중 ③ 내지 ⑦의 자질을 훈련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1년차에는 민사법, 형사법, 공법 영역의 기본법 내용과 그 해석론을 배우고(③ 및 ④), 2년차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법리에 포섭하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연습하는 한편(⑤), 소송법 및 심화과목을 이수하여 재판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연마한다. 3년차에는 모의 사건 기록을 통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방법 및 소송에서의 공격방어법을 연습하고(⑥ 및 ⑦), 각종의 선택과목을 통해 전문분야별 개별법 이론을 익힌다.

이 중 가장 양이 많고, 고통스러운 시기는 1년차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아직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지난 2천년에 걸쳐 쌓여온 법리를 일방적으로 주입당할 뿐이다. 법조인은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와 달리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및 자신에게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범의 내용 및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률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모든 법학교육의 기본이 된다. 1년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 3년차의 연습 자체가 불가능하며, 1년차에 이수하는 기본과목의 학점에 따라 학생들의 실무수습 기회나 취업의 질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1년차에 최고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체력과 지력, 시간을 쏟아 부어 일반인으로서 상상하지도, 감내하지도 못할 학업량을 소화해낸다. 법학전문대학원 1년차 학생들에게 주로 요구되는 자질은 성실성과 체력이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학문의 기본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터득하기 위한 독해력과 암기력이 더불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 중 법학적성시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독해력뿐이다.

설문조사 결과 성별, 연령, 지역, 종사업무를 불문하고 법학적성시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언어이해라고 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답변 비율은 특히 법학사일수록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아마도 법학전공자는 이미 학부 과정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1년차에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살인적인 학습량이 수험생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최근에는 많은 학생들이 입학 전에 미리 관련 과목의 선행학습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비법학사의 경우라도 독해력과 암기력이 당장에 절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현재의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1년차의 성적, 특히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 ③과 관련된 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문제는 1년차의 성적이 2년차와 3년차의 성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1년차의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2년차 내지 3년차에 개별지도해보면 예상치 못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뒤쳐진 학업을 만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분명히 충분한 법학적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1년차에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에 대해 법학적성이 없다고 낙인을 찍거나 학업에 흥미를 잃어 2년차 이후에는 아예 학업을 손에서 놓는다거나, 1년차에 마땅히 닦아야 하는 기본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2년차의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다 보니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늘 만족스럽지 못한 학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학적성과 3년간의 법학성적이 비례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능력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행 법학적성시험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법학적성시험 무용론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3. 법학적성시험의 개선방향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성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학적성시험에 맞추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맞추어 법학적성시험을 개선하는 것이다.

앞의 방법으로는 암기식·주입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추론능력 내지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법학전문대학원 1년차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법학부 시절과 비교해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충격적일 정도로 변모하였다. 교수가 자신의 관심 분야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은 이제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담당과목 전반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그것을 실전에 응용하는 방법까지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 한정된 시간 안에 광대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수업방법이 시도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과정을 개선하더라도 법학 공부방법론의 기초는 변할 수 없다. 문외한의 시각에서 보면 거의 외국어에 가까운 법률용어를 암기하고, 그 법률용어들의 용법을 정

확하게 익혀 법리(문법)에 어긋나지 않게 문장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그 문장들을 이용하여 수준 높은 논변을 펼칠 수 있으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반복학습으로 기초를 닦는 1년차 교육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아무리 법학적성이 넘치더라도, 훈련이 없으면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방법은 택할 수 없다.

뒤의 방법을 택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맞추어 법학적성시험을 개선하려면 법학적성시험이 1년차 성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응시생들의 법학 지식을 묻는 수밖에 없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2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본질 자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법을 택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 실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채용해본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은 종종 폭넓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깊이 있는 리서치 능력, 기존의 학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논거 발굴 능력, 상대방의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반박논리를 만들어내는 순발력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강점으로 제시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적성시험을 법학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나 성실성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전환시킨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능력을 담보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훌륭한 실무가가 될 자질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누차 반복하는 바와 같이 논리적 사고능력은 법조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법학적성시험 뿐이다.

하지만 법학적성시험의 유용성이 입증되는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은 시험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므로, 그 유용성이 즉각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험을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의 반영률이 낮아지고, 반영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춘 법조인이 배출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4. 구체적인 개선방안

법학적성시험에 의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의 유형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모두 고정한 상태에서 법학적성시험의 유용성 발현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가. 장애기능

첫째, 법학적성시험 자체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법학공부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법학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도대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왜 이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학을 잘하려면 이런 글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도 좌절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기보다는, 법학적성시험의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을 찾거나 자기소개서·학점·면접 등을 통해 법학적성시험의 성적을 만회하려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자신에게 법학적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수험생들은 법학적성시험의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소속대학의 법학 교양강좌를 수강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1년차에 배울 과목의 교과서를 찾아 읽는 것이 통상이다. 법학적성시험이 정작 수험생 본인에게는 법학 적성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학적성시험의 소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응시생이 법조인에게 필요한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물론 어떠한 소재가 주어지더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고급의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고급의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은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형의 응시생은 굳이 법조인이 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더라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율로 따지자면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응시생은 자신에게 익숙한 소재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푸는 반면, 생소한 소재의 문제는 정답률이 낮다.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끝끝내 그것이 왜 정답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정답을 알지 못해도, 자신 없는 분야의 문제는 몇 개쯤 포기해도 당락이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험은 결코 좋은 시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이 대부분의 응시생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응시생 스스로 '이 문제의 정답을 납득할 수 없는 내가 과연 법조인으로서 개별 사안에서 요구되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반추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자신에게 생소한 소재의 문제를 푸는 경험도 매우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전문화

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법조인은 여전히 제네럴리스트(generalist)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뢰인이 어떤 사건을 가져오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의 관점에서 납득할만한 결론을 이끌어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학적성시험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적성시험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 관련 소재의 비중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응시생들이 다양한 법학의 논변들을 접하고, 자신에게 이러한 소재의 글에 대한 흥미와 이해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학적성시험이 이러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학적성시험 중 일부 문제에 특화된 능력 또는 학점이나 자기소개서 등 다른 전형 요소에만 의존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비로소 법학에 흥미가 없음을 깨달아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유인기능

둘째,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법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학 적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전달 위주로 진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 1년차 학업에 적응하지 못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학적성시험은 이러한 응시생들을 위해 일단 그들이 기본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응용학문’으로서의 법학에서 얼마나 뛰어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추리논증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항 중 추리 부분의 문제는 매우 압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연역적 사고만을 이용하여 정답을 추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추리문제의 유형은 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례 중심 교육(case-method)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존 추리문제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대신 각 문제를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쟁점을 담은 스토리텔링식 추리문제로 변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추리문제의 소재를 법학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한다면, 법학 지식을 본격적으로 묻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법학적 사고방식(legal mind)의 습득을 도울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법학적 사고방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응시생들에게도, 교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의 1년차 교육은 주로 방대한 법학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정작 평가를 위한 시험은 지식습득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식 문제가 아닌, 응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전에 법학적 사고방식을 습득한 응시생은 입학 후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법학지식 중 사례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아닌 정보를 손쉽게 분별할 수 있고, 아직 법학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법학적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약 법학적성시험이 이러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은 법조인이 될 자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단계에서 학업에 흥미를 잃고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의 숫자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지식이 장차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V. 나오면서

결론은 분명하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적성’과 매우 관련이 깊다. 하지만 정작 ‘법학적성’은 담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학적성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학지식은 법조인의 기본이지만, 법조인의 완성은 사고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학적성시험만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좋은 성적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두루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라면 실력 있는 법조인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다만, 현재와 같이 법학적성시험에 의해 입증된 능력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은 기존의 측정기능, 즉 법학적성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장래 좋은 법조인이 자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 외에 즉각적인 효과를 갖는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기능은 장애기능과 유인기능이다. 법학적성시험의 주된 수요자, 즉 응시생과 입시 담당자들에게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은 적어도 법학 자체에 대한 흥미나 적성의 부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중도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학에 적성이나 흥미가 없는 사람은 애초부터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법학에 적성이 있는 응시생은 학업 초기에 습득해야 하는 법학지식에 매몰되어 법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 전체에서 법학 기타 인접과목 소재의 비율을 대폭 높이고, 리걸 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는 방식의 추리 문제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법조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자료집

발표 04

법률 전문가에게 요청되는 능력과 법학적성시험

하 재 흥 (경기대학교 교수)

법률 전문가에게 요청되는 능력과 법학적성시험

하 재 홍 (경기대학교 교수)

I. 서론

법학적성시험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시행¹⁾과 함께 처음 도입되어, 금년에 제8회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의 자질을 직접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부 졸업(예정)생들을 대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나 법학적성시험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는 인재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법학적성시험은 단순한 법학지식의 측정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학부 전공의 배경을 불문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이해 능력 및 논증적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가 배출된 지 4년 남짓이지만, 아직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패(成敗)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적성시험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아직은 이르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과 요구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든, 교육과 시험은 늘 기성세대가 남긴 ‘현재’를 계승하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교육이나 시험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현실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박관념과 무관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로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를 간단히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없듯이, 현재의 문제를 간단히 극복해 낼 수 있는

1) 법학교육 및 사법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그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물론이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에 관해, 학생의 출신학부, 등록금액수, 수업내용, 수업방식, 특성화 문제 등등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적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내부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야 할 것이다.

시험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학교육의 개선과 관련된 모든 고려사항과 요구조건들을 모두 법학적성시험에 관련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칫 시험제도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시험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까지 시험으로 요구하는 것이 되어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의 교육과 시험제도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하의 논의는 개선의 점에서 가능하면서도 꼭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적성시험이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해 살펴보면 서,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법학적성시험의 지향점

어떤 사회에서든 그 사회에서 법에 관한 논의의 내용이나 성격은 그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와 큰 관련을 가진다. 법에 대한 이해나 법의 운영에 있어서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있어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로 법적 판단에 있어 논증의 면이 두드러지게 강화된 것을 들 수 있다. 과거가 법적 쟁점에 있어 고위직 또는 실무 경력자의 오랜 경험에 비롯된 ‘한 말씀’에 누구든 말문을 닫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누구든 들어서 합당한 논증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법조인들 사이에도 미덕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는 훌륭한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논증 및 설득능력’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예비법조인의 자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지식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자기표현능력의 측정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법학적성시험이 ‘논리적 사고능력’이나 ‘비판적 분석능력’이라는, 다소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시험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 ‘언어의 마술사’이자 언어로 싸우는 ‘대투사(代鬪士)’ 후보를 선발하면서 언어사용 능력에 관해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1. 법·법적 논증과 가치 판단의 문제

법적 사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적 진리/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편익(convenience)에 기여 하는가’ 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쟁점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와 당파’의 문제는 결코 ‘좌이나 우이냐’의 문제와 동의어가 아니다. 분쟁이 인간 사회의 존재조건이라면, 법은 바로 그러한 다툼이 있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다. 법적 사안은 근본적으로 분쟁 사안이다. 법적 사안에서는 양측 당사자가 서로 대립된 입장을 전제로 논증을 전개한다. 법률실무가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Advocate)이며, 훌륭한 법률가일수록 그런 역할에 뛰어나다. 법관조차도 어떤 법적 분쟁이든 조정과 화해로만 해결하지 않는다. 이렇듯 대립당사자들의 상반된 시각과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또 어느 일방의 승리, 다른 상대방의 패배로 귀결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정치적이고 당파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법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를 찾아 제시하는’ 작업이 아니라, 인간사에 상반된 의견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제도와 방법-제도화된 절차와 규범-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질에 있어서 정치와 동일하다. 즉 법적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문제이다.

법과 정치가 서로 별개이고 법적 판단은 정치적 판단과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법은 공정한 분쟁해결의 기준’은 환상에서 생겨난 것이다. 법적 문제를 중립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정치와 당파와 관련한 문제가 ‘좌이나 우이냐’, ‘울법이나 울법이 아니냐’의 문제와 같이 근본적인 차원으로만 환원되는 사회는 불행히도 정치와 당파의 문제를 근본주의적 입장에 영역을 내어주고 건전한 사고와 판단의 여지도 봉쇄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법률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것은 법조인에게 맹목적 애국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쟁 사안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견(異見)이 존재할 수 있으며, 법률가들이 그것을 잘 대변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또 분쟁의 해결기준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실정법의 엄격하고 논리적인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인의 시각과 이해에 기반 하여 그 사회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애국심은, 물론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이지만, 이견을 봉쇄하고 일방적인 해법을 강요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어서는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만다.

정리하자면, 미래의 법률가들은 논쟁적인 주제들을 편견 없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법조인은 가치 충돌을 중심으로 한 인간상·사회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언어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길러야 하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논증하고 논박하는데 능해야 한다. 법적 사안에 있어서 법관의 판단도 변론을 통해 구체화되는 경쟁적인 가치들 속에서 일정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요구한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비록 똑똑하다는 평가는 받았을지언정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며 재판을 ‘합리성이 재배하는 토론처럼’ 진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탓에, 선례를 추종하거나, 법도그마에 의존하거나, 가치 판단의 문제를 사실 입증의 문제로 환원시켜 승패를 가리거나 하는 미성숙한 행태를 보였다면, 그러한 한계를 오늘날 되풀이해서는 옳지 않다. 법을 다루게 될 예비법조인들은 가치중립적인 가면을 벗고 가치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에서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면, 첫째 위와 같은 법적 사안의 기본적인 특징 내지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논쟁적인 제시문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치충돌을 중심으로 한 논쟁을 직접 다루도록 논술과 같은 유형의 시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²⁾

2. 법과 언어

언어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창구이며, 언어를 지배하는 사람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다. 법에 있어서는, 무엇이 법인지, 어떤 법이 존재하는지, 법이 세계가 어떠한지를 법언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의 하나는, 법언어에 관한 통념과 관련된다. 법률가들은 전문적이고 고유한 언어를 통해 법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언어를 통해 의미의 폭을 한정지으려 노력한다 해도, 법의 언어는 평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일상 언어의 의미 폭을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다. 법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용도로 특수한 법 언어를 개발하고 논증에 사용할 수 있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논증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일반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범위를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법의 언어는 ‘일반인의, 일반인에 의한, 일반인을 위한’ 언어이어야 한다. 이것은 법의 의미가 일상적

2) 가령, 엠 톰슨(이문성 역), 『비판적 사고와 윤리』, 서광사, 2009는 부록으로 ‘중요한 윤리적 쟁점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임신중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찬·반에 관한 기본적인 두 입장과 각각의 논거들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관련된 법조문이나 대법원 판례를 암기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벗어나 논증적인 주제를 얼마나 논증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역할을 측정하는 차원에서 적성시험문제의 유형으로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 언어를 통해 제시되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의 해석 역시 일반인이 접근하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의 의미, 결국 법의 세계는 일반인의 일상 언어의 의미 내에, 그리고 일상 언어의 세계와 일치해야 한다.

한편 일반인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는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해, 이것은 입법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을 제정하였어도, 그 문언은 항상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읽힐 수 있으며, 입법자조차도 그 해석을 독점할 수 없으며 해석이 일반인에게, 그리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법률의 해석에 있어 법률가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법언어를 전문가들만의 용법으로 독점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 ‘법에 대한 시민적 독해와 이해’ 속에 성장하고 변화하는 언어(의 의미)를 일정한 고정된 범위 내에 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법전문가들이 현대의 법 언어와 그 의미의 판단에 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평균인들의 언어관용과 이해, 생활의 맥락 속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현대와 같은 사회를 겪어보지도 않은 것이 너무도 분명한, 먼 과거 속의 ‘현인들’에게 그 의미를 물으려 한다면, 그것은 실수이다.

언어의 미결정성 외에 일반인의 언어사용에 있어 특이한 점은 ‘논리’만이 법 해석을 지배하는 절대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논리적인 언어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면, 비유나 우화(寓話)들, 상상과 정념을 자극하는 언어는 사람들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에서 언어의 특성을 잘 반영한 문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법률가의 자질은, 주어진 제시문을 -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생소한, 그러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든 간에 -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지 않다. 법률가로서의 진정한 자질은 언어의 힘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3. 대학교육

법학적성시험은 시험으로서 대학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 대학의 학부과정 교육 전부를 대신할 수 없다. 법학적성시험이 얼마나 잘 설계되고 좋은 양질의 문제로 학생들의 자질을 측정하려고 해도, 예비법조인들은 학부교육 과정을 통해 읽고, 쓰고, 표현하고, 논쟁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야 한다.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통해서건 비교과과정을 통해서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가치평가와 판단,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논쟁과 토론, 민주적 가치관을 익히고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비법조인들에 독서활동, 토론활동이 권장되는데, 아쉬운 것은, 법학은 말할 것 없고,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긴 선물’이라는 ‘고전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드물고, 또 좋은 번역물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거론되는 대학의 위기현상, 특히 인문학의 위기는 법학에는 물론, 예비법조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전공의 다양성과 교육의 질이라는 점에서도 우려할 일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사업단은 기본적으로 법학적성시험을 계획하고 출제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양질의 시험문제가 출제되도록 충실을 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유익한 제시문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논제와 제시문의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과 관리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Ⅲ. 개선안에 대한 평가

현행 법학적성시험의 영역구성이나 문항수, 시간 등에서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꼭 변경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부분은 없다는 것이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일반의 평가라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출제영역을 세 영역에서 네 영역으로 변경하고, 문항수를 조정하는 것은 사소한 기술적인 변경이 아니라 중요한 변경이라 생각된다. 먼저 독해 및 추리, 비판영역별로 이원분류표에 입각해서 문항 성격 및 내용을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독해 영역을 기존 ‘언어이해’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추리논증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도 축소된 부분이나, 논술영역에서 답안분량을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존의 세 출제영역 중에서 언어이해를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설문조사결과로 나타난 대체적인 경향이었고, 또 논술 영역도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오히려 난이도를 높이고 시간이나 분량도 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선안에 덧붙여 한 가지 사항을 건의하자면, 학계의 여건상 좋은 연구서나 번역서 하나 내놓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에 관한 논의나 논쟁이 학계나 사회적으로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법학적성시험은 단순한 지능측정시험이 아니고 다양한 차원의 지문구성은 물론, 제시된 문제를 통해 일정한 사고,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해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과 도덕적 감수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 문항을 제작해도 기술적인 문제로 문항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출제 과정에서 완성되지 못해서

폐기되는 문항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영양가 있는 내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어떤 형태로든 교육이나 시험 준비에 유용한 콘텐츠로 선별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된다. 특히 논술의 경우에는 문제로서 지문 외에도 답안의 작성에 있어서 준수할 사항으로 일종의 표준화된 방식이나 스타일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일정한 스타일의 답안작성요령, 즉 논증적 글쓰기의 표준적인 규범이 사전에 제시되고 또 이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으면 출제위원들의 부담이 줄고 답안채점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V. 결론

법학적성시험은 법률가의 자질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다. 현재의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측정하는 예비시험이고, 진정한 법률가는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학적성시험은 법률가를 꿈꾸는 예비법조인들에게 중요한, 그리고 쉽지 않은 시험이자 관문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제도로써 요구되는 자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변별성을 가질 수 있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억력 좋고 똑똑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재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의 법조는 훌륭한 법률가상으로 떠올릴만한, 위대한 법조인의 모델을 가지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보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평소 흠모하고 존경하며 모방의 대상으로서 따라야 할 법률가가 누구인지 추천할 인물이 딱히 없다는 이 민망한 사태는, 현재를 살고 있는 법조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학부 전공을 배경으로 한 인재들이 법학을 전공하고 있고 또 실무가로 배출되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학의 발전이나 실무의 운영에 있어서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협회회의 법학적성시험 사업단은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자료집

발표 05

고급 사고능력 시험의 표준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

송 하 석 (아주대학교 교수)

고급 사고능력 시험의 표준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

송 하 석 (아주대학교 교수)

1.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적성시험

20세기 말부터 교육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평가제도로써 적성시험(aptitude test)의 도입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학입시는 학력고사였다. 이 시험이 수학능력 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는 제도로 바뀐 것은 1993년도부터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것이 바로 수능시험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수능시험이 적성시험 시대를 선도한 첫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평가시험은 평가 내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여 성취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식형 시험과 다른 하나는 잠재 능력(혹은 최근 유행하는 용어로 역량)을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고형 시험이다. 그리고 사고형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적성시험이다. 학력고사에서 수능 시험으로의 변화가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대학입시가 지식형 시험에서 사고형 시험, 즉 적성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 지식형 시험보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적성시험이 일반적인 평가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현대사회를 지식기반 사회, 정보사회라고 한다.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정보는 거의 모두 공개되고 공유된다. 정보의 소비자와 시민들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정보를 갖게 되어, 특정 전문가 집단이 지식을 독점하고, 지식을 독점한 계층이 일반 대중 앞에 군림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많이 머리에 저장하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추론능력, 그리고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이다.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추론능력과 분석력, 합리적이고 비판

적인 사고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은 자연스럽게 교육에서도 변화를 불러왔다. 교육에서 변화의 핵심을 요약하면, 교육 목표는 이제 지식의 확장뿐만 아니라, 주어진 지식을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competence)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역량이란 간단히 말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적성이란 특정한 분야의 활동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량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평가 방법이 적성시험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결국 적성시험의 확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추세에 따른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내 유수의 대기업 중에서 입사시험을 적성시험으로 보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급 공무원 선발에서도 PSAT라는 사고형 시험이 지식형 시험이던 기존의 고시 1차 시험을 대신한지 오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으로 사고형 적성시험을 도입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 법학적성 시험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법학적성 시험(이하 리트)의 첫 번째 역할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서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리트는 “법전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법전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기능을 제고하고 법학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³⁾ 한편으로 법전원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리트는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적성을 측정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법전원 협의회는 홈페이지에 리트를 “법전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전원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학능력 무엇인가? 또 법조인이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이나 적성은 무엇인가? 사실 법조인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법전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수학능력은 매우 많을 것이다. 결국 리트가 측정할 수 있는 수학능력과 적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리트가 측정해야 할 소양 혹은 적성은 무엇일까?

법전원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학 지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리트는 법학 지식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수학능력이 리트에서 측정해야 한다. 법전원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은 다양한 배경지식과 더불어 독해력, 표현

3) <http://www.leet.or.kr/> 참고

력, 사고력(추론 능력, 논증평가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조인이 다루는 업무 범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그리고 범죄 수사 등 매우 광범위하고, 또 그들이 각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도 역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소통력, 그리고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리력과 문제해결 능력이다. 결국 법전원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⁴⁾

미국의 법전원 입학시험인 LSAT도 그 시험 목표를 법전원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능력인, 복잡한 지문을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 정보를 구성하고 다루며 그로부터 합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추리와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리트의 최초 설계를 담당한 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팀이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법학교수 300명, 변호사 100명, 판사 100명, 검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조사 결과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문제해결 능력(94%), 사건과 상황의 분석능력(92%), 논증구축 능력(87%), 추론 능력(78%), 규범적 사고력(73%)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전원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리트는 이러한 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리트가 평가해야 할 인지활동 영역이 문제해결 능력, 논증평가 및 구축 능력과 추론 능력 등이라면, 리트가 다루어야 할 내용 영역은 광범위한 법조인의 업무 영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팀이 법조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배경지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인문, 사회과학 영역에 대해서는 80~90%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과학기술 영역에 대해서도 40~50% 정도는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리트는 학문 전반에 걸친 영역을 그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요컨대 리트는 인문, 사회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깊이 있는 지문을 소재로 하여 독해력과 표현력, 그리고 광범위한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될 때, 법학적성 시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런 점에서 김한승은 “리걸 마인드(법학적 소양)은 곧 로지컬 마인드”라고 주장한다. 김한승 (2008) “법학적 소양 대 철학적 소양” 『대동철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29~30 참조.

3. 리트의 진화

리트가 2008년 여름 처음 시행된 이래(2009학년도 리트),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 변화는 시험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을 조정한 것이다. 모의시험과 2008년 첫 번째 시험에서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모두 40문항이 출제되었고, 시험시간도 언어이해는 90분, 추리논증은 120분이었다. 2010학년도 시험부터 두 과목 모두 35문항으로 문항 수를 줄이고 시험시간도 각각 80분과 110분으로 줄였다. 이는 어려운 문제를 집중하여 너무 오래 풀게 하는 것은 적성시험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문항당 풀이 시간은 실제로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 변화가 획기적인 개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트의 두 번째 변화는 보다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 변화의 핵심은 언어이해에서 어법, 어휘 문제가 사라진 것과 문학 지문이 사라진 것이다.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 리트에 어법과 어휘력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출범 당시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몇 년 계속되다가 어휘, 어법 문제는 2014학년도 시험부터 사라졌다. 어법에 맞게 문장을 정확하게 쓸 줄 아는 능력과 어휘에 대한 정확한 용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지식에 속하는 문제이지 사고능력은 아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리트는 이제 명실상부한 사고형 시험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⁵⁾

리트가 법학적성 시험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출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논란이 있었고, 몇 차례의 개선을 통해서 사고형 시험의 표준적인 모범으로 조금씩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리트가 법학적성 시험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법학적성 시험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리고 이번 개선안은 그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필자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필자가 현재의 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험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사람마다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다르겠지만, 집중해야 할 대상의 유형이나 난이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인 수준의 강의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5) 대표적으로 여영서는 법학적성시험이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야 하고, 따라서 리트에 어휘, 어법문항이 출제되고 문학 지문이 출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여영서, (2008) “법학적성 시험은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도구인가: LEET, LSAT, PSAT의 비교 연구” 『대동철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12~13 참조.

40분, 중고등학생은 45~50분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60~75분 정도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물며 그것이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치루어야 할 시험의 경우라면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지식형 시험의 경우도 100분 이상의 시험시간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사고형 시험의 경우 피시험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험 시간을 7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선안 중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시험과목을 늘리는 대신 각 시험 시간을 줄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간을 줄여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리트에 대한 수험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속독능력 테스트”라는 것이었다. 물론 주어진 시간에 일정한 분량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리트가 속독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님은 물론이다. 만약 속독능력에 따라 수험생의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개선안이 전체 시험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집중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문항 당 주어진 시간이 현행 안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언어이해(독해)의 경우 문항당 풀이 시간은 2분 14초에서 2분 48초로 상당히 늘어나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시험이 시행되면 독해의 점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리논증은 문항당 풀이 시간이 3분 9초였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추리는 문항당 풀이 시간이 2분 24초, 비판은 3분 12초가 된다. 지금까지 추리논증에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바로 논리퍼즐 유형의 추리문제였다. 그런데 추리는 오히려 문항당 풀이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물론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추리의 경우 1지문 다문항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리능력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한 시간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추론능력이 있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풀이를 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많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언어이해’ 과목을 ‘독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과, ‘추리논증’을 ‘추리’과목과 ‘비판’ 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런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추리논증’ 과목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지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현행의 ‘추리논증’에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추리 문항과 이러한 추리과정을 담고 있는 논증

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판 문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설문에서 이로 인해 혼란이나 어려움을 있었다고 답한 사람이 32.3%였다. 물론 그렇게 느끼지 않은 사람이 두 배 정도로 많지만 수험생의 약 3분의 1이 그런 문제를 느꼈다면 개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한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적성시험의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하나의 시험에서는 통일적인 인지활동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험생들은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라는 것은 낮지 않은 수치다.)

4. 사고형 시험의 표준으로서 리트

다른 사고형 시험과 비교해서 리트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리트의 교육적 효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LSAT는 명시적으로 “다음 글이 옳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고, PSAT도 많지는 않지만 가상의 상황의 제시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리트의 출제자는 자신의 전공분야의 제시문을 사용하여 학문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글들이다. 특히 수준 높은 인문, 사회과학의 고전을 제시문으로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로 하여금 시험준비를 위해서 고전에 대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대학 교육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⁶⁾

필자는 리트가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적절하게 개선된다면 법학적성 시험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급 사고능력 시험의 표준으로서, 다시 말해서 범용 고급 사고능력 측정시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학 관련 전문지식을 제외하면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배경지식과 사고력이란 사회 주도층과 수준높은 교양인에게 요구되는 배경지식과 사고력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배경지식을 담은 지문을 소재로 독해력, 추론 능력, 논증분석 및 평가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리트는 법학적성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도록 진화하고 있지만, 법학적성 시험의 기능을 넘어서 일반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사고형 시험의 표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6) 실제로 법전문원이나 의전문원, 치전문원과 같은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의 도입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대학 학부교육에서 기초학문을 살리려는 목적도 있다. 물론 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실제로 대학 학부교육에서 기초학문이 어느 정도 살아났는가는 논란거리다.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자료집

발표 06

논술 시험 채점 방식의 개선에 대한 제안

박 정 하 (성균관대학교 교수)

논술 시험 채점 방식의 개선에 대한 제안

박 정 하 (성균관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개선이 필요한가?

이 글의 목적은 현재의 법학적성시험 논술 채점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논술시험 채점 방식’이란, 출제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이 담당하여 채점 기준과 해당 답안을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내고, 채점은 이 자료를 기초로 각 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글이 개선안을 제안한다고 해서 현행 채점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채점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실제로 노출된 적은 현재까지는 없다. 현재의 채점 방식은 다각도의 연구와 우리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나 문화에 잘 맞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기초연구 결과 발표 공청회] 자료집에 의하면, 논술은 도입 초기에도 왜, 어느 정도 필요한가가 쟁점이 아니었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채점 방식이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채점 방식을 검토한 후 현재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을 채택할 때 당연하게 전제한 것 중 하나는 법학 적성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모든 논술 답안을 일괄 채점하는 체제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었다.⁷⁾

논술 채점 방식의 문제점이 현재 심각하게 불거진 것은 아니지만 법학적성시험의 개편이 논의되는 시기이니, 이때 현행 논술 시험의 채점 방식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혹시 잠재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보고, 현재의 방식을 채택할 때 전제했던 저 인식이 지금도 타당한 것인지 재평가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 글은 현재 채점 방식이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채점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일단 가장 유력한 안으로 놓고, 현재 방식에 잠재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 이를 기초로 논의 가능한 개선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7) [법학적성시험 기초연구 결과발표 공청회 자료집](2006), 73쪽.

2. 현재의 채점 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의 논술 채점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공통된 채점 지침을 토대로 하지만 각 전문대학원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평가를 시행할 수 있고 또 반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본다면 현실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구석이 있다.

1) 현실적 차원

우선 현실적으로 보면 논술의 중요성을 인정한 강도에 비하면 실제 반영 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5학년도 현황을 보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논술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곳이 5개원이며(경희대, 서울대, 원광대, 중앙대, 한국외대),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배점 없이 반영하는 곳이 4개원이다. 고려대는 1단계에서 P/F 방식으로 반영하고 연세대와 동아대는 1단계 서류 심사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충남대는 2단계 면접 시 반영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나머지 중 성균관대(1단계 총점 80점 중 논술 10점 반영)를 제외한 15곳은 2단계 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다. 이 중 건국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전남대, 한양대는 10% 반영하고 있고, 강원대, 경북대, 인하대는 10% 미만으로, 이화여대(‘심층선발’만), 전북대는 15%, 부산대(‘가’군만), 서강대, 제주대, 충북대는 20%를 반영하고 있다. 아주대는 서면평가가 15%인데 논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반영비율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을 합친 ‘리트 성적’⁸⁾과 비교해서 논술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하는지도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논술 배점이 리트 성적의 50%인 곳이 3개원이며, 66-80%가 3개원, 리트와 같은 배점(100%)을 부여한 곳도 3개원이다. 반면에 33-40%가 3개원, 10-25%가 3개원이다. 아주대는 논술을 포함한 서면 평가가 리트의 50%이므로 논술만 하면 50% 미만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논술을 점수로 반영하는 16개교 중 리트의 50% 이상 비중으로 반영하는 곳은 9개원이고 50% 미만의 비중으로 반영하는 곳이 7개원이다.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중 80%가 어떤 방식으로건 논술을 반영하고 있고, 구체적인 배점을 부여한 곳도 64%이며, 이 중 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리트의 50%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기에 논술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따져보면 실상은 다르다. 25개원 전체가 1단계 전형에서 리트를 20-50% 반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8) 리트(LEET)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리트 성적’이라고 하면 논술 성적까지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 점수가 통보되는 것은 앞의 두 영역 만이므로 일반적으로 ‘리트 성적’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의 점수를 합친 것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런 용법 자체가 논술을 리트와 구별하는 오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여기서도 편의상 그 용법에 일단 따른다.

보면 논술의 활용도가 높은 수준이라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논술을 리트의 50% 비중으로 반영해야 리트의 세 영역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셈인데 25개 전문대학원 중 단지 9개만이 논술을 리트의 50%이상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머지 16개 전문대학원은 논술을 다른 두 영역에 비해 비중이 낮은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리트에 비해 논술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공식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사와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할 사람에게 언어이해나 추리논증에 비해 논술의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을 합리적 이유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논술 시험이 리트의 한 영역으로 시행되고 있고 학생들이 이를 준비하기 위해 상당 시간을 투여하고 있으며 시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아예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논술의 활용도가 논술 시험 채점 방식에 기인한다는 증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활용도를 높일 채점 방식이 있다면 그 채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도 개선안을 구상할 때, 활용과 채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염두에 두었다.⁹⁾

2) 제도적 차원

다음으로 제도적 차원에서도 현행 논술 채점 방식의 잠재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점들을 모두 출제와 채점이 별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제도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두 가지가 부각된다.

첫째, 출제와 채점이 별도 기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출제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채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현재 출제진에서 채점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확인에 따르면 논술을 반영하는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 지침을 최대한 살려 채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출제와 채점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는 채점이 출제 의도나 채점 기준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을 토대로 이를 더 보완하여 채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출제진의 출제 의도와 다르게 채점이 진행될 경우 채점의 타당성도 문제가 되며 출제를 위해 투입된 자원과 시간이 무용지물로 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출제 의도와 채

9) 공식적인 조사나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필자가 접했던 다양한 때로는 상반된 비공식적 반응을 기초로 하였다. 점은 이 글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점 기준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채점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당수의 전문대학원이 시행하고 있듯이 법학교수만으로 채점조를 이루어 운영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논술 출제에는 법학 전공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가 참여하여 법학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런데 채점을 법학교수진 만으로 진행할 경우, 법학 영역의 전문성이 바로 논술 채점의 전문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 중에서 전공만이 아니라 평소 성향 등을 고려하여 논술 채점에 가장 적절한 채점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투입한다 하더라도, 논술 문항의 제재나 내용에 따라서는 채점자의 한계를 노출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출제진이 의도한 요소가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제와 채점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채점 방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각 전문대학원에서 법학 교수만으로 채점조를 구성하지 말고 인문 사회 전공 교수를 채점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점조에 투입되는 법학 교수도 신진급 교수에게 맡기는 등의 임의적 방식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채점자로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출제와 채점이 분리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채점자의 의견이 출제진에게 전혀 피드백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는 출제진이 직접 채점 및 채점 관리에 참여하여 채점자들 사이의 미세한 쟁점이나 문제점들까지 확인을 해야, 이를 논술 문제에 대한 피드백으로 수용하여 다음 출제에 반영함으로써 논술 문제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런 동적인 소통과정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그리고 채점 결과를 분석해야 난이도나 변별력 조절이 가능한데 현재는 이것 또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논술 출제진은 채점자와 학생의 반응을 전혀 모른 채 순전히 평소의 교육 경험과 다른 논술 출제의 경험에서 쌓은 ‘감’에 의거하여 변별력을 예상하고 난이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¹⁰⁾ 이런 상황에서는 반응 자료에 근거하여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지 이전 2-3년의 논술 문제를 기준으로 미세 조정해가는 ‘땀질’식 출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두 영역에서는 직접 채점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별로 심도 있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출제진에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문제가 발전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의 제도로는 리트 논술 문제가 장기적으로 발전과 개선을 이루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대학원에서 논술 채점 결과에 대한 자료나 채점자의 의견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체제가 공식적으로 갖추어 지거나, 아니면 각 전문대학원에서 논술을 채점한 교수 중 대표

10) 소속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트 논술에 대한 강의나 특강을 한 교수도 출제위원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논술 기출 문제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출제자가 확인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들이 매년 세미나나 간담회 형식으로 모여서 구두로라도 의견을 전달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어떤 개선안이 가능한가?

앞서 제안한 보완책들을 시행한다면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출제와 채점의 분리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상당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변화의 폭이 큰 개선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공청회는 현실 제도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 세 개를 선택하여 정리하였다.

첫째는 출제와 채점의 분리를 극복하여 이를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는 안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출제한 다음 일괄 채점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괄 채점〉으로 표기) 둘째는 출제와 채점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보다 채점자의 재량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술 문제의 성격을 대폭 변화시킴으로서 논술의 활용을 유도하는 안이다. 미국 LSAT에서 시행하는 writing sample 개념을 도입하여 각 전문대학원이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앞으로 〈글쓰기 자료〉로 표기) 셋째는 현재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채점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협회에 의뢰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만 협의회에서 채점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위탁 채점〉으로 표기)

1) 1안: 〈일괄 채점〉

리트 응시자 전원의 논술 답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채점해서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면 각 전문대학원이 논술을 활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대체로 논술을 2단계에서 반영하지만 〈일괄 채점〉이 실현된다면 1단계에서 반영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논술 시행 초기에 이 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되었다. 다시 〈일괄 채점〉을 하나의 개선안으로 살려내려면 불가능하지 않음이 설득력 있게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응시자의 논술 답안을 일괄 채점하려면 10,000명 내외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문항이 2개이므로 20,000개 내외의 답안을 채점해야 한다. 시험이 갖추어야 할 타당도, 신뢰도, 변별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과연 이런 대규모의 채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 3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다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채점자 풀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가 된다. 대

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이다. [법학적성시험 개발·시행을 위한 후속연구]에 따르면 이미 2008년에 다양한 전공의 전임교수 45인을 섭외하여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논술에 대해 채점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때는 다양한 전공의 교수를 섭외했지만 이들을 제외 하더라도 2005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대학에서 글쓰기 관련 강의가 핵심 과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글쓰기를 전담하는 전임 교수(정년, 비정년 포함)가 수도권만 하더라도 60명 이상 임용되어 있다. 초빙교수, 강의전담 교수 등 까지 합하면 100명 이상의 인력이 포진되어 있으며¹¹⁾ 관련 학회도 3곳이나 된다. 지방까지 합치면 이 수는 훨씬 늘어난다. 또 이들 중에 각 대학 입시에서 논술 채점자로 경험과 경력을 쌓은 사람도 다수이다. 따라서 논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채점자 풀은 확보 가능하다. 더구나 현재 글쓰기를 전담하는 교수로 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전공자만 임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사회과학 등 다양한 전공 출신의 교수도 다수 있기 때문에 채점자의 전공을 다양하게 안배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각 채점조를 구성하는 3인의 출제위원의 전공을 각각 법학, 어문학, 철학 및 사회과학으로 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채점자 풀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채점자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응시자 수가 많다보니 동일한 채점조가 한 문항의 채점을 다 맡을 수 없고 복수의 채점조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때 채점조 사이에 채점 기준의 일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채점의 ‘신뢰도’의 중요한 측면이다. 응시자 10,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복수의 채점자로 이루어진 한 채점조가 1,000장의 답안을 맡는다고 할 경우, 10개의 채점팀을 운영해야 한다. 3명이 복수 채점한다면 30명의 채점자가 투입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들 사이의 편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가 <일괄 채점> 성립여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 또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두 방향에서 접근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해결책은 이미 대학입학 논술 채점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채점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증된 바에 따르면 논술 채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채점위원 워크숍 → 문항별 채점위원 워크숍 → 가채점 → 본채점 → 재채점’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²⁾ 앞의 세 과정은 채점위원 사전연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점자들이 사전에 문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채점 기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숙지하는 과정을 밟아가며, 무작위로 추출된 일정 분량의 샘플 답

11) 예비시험 채점을 운영할 때에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자신의 기준에 의거하여 전임교원만을 참여시켰지만 대학의 교수 임용 방식과 지위가 다양해진 현 시점에서는 초빙교수와 강의전담교수도 채점자 풀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많은 대학들이 대입논술 채점에 초빙교수와 강의전담교수를 참여시키고 있다.

12)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논술 채점에서도 이 과정이 잘 조직되고 진행되었다. [법학적성시험 개발·시행을 위한 후속연구](2008), 93-119쪽.

안에 대한 가채점 및 협의를 통해 채점 기준을 맞추는 영점 사격과 흡사한 과정을 밟게 되면 채점자간 차이를 상당 정도 약화시켜서 채점위원의 관점을 상당정도 수렴시킬 수 있다. 본채점에서는 각 채점자는 등급부여 방식으로 채점하지만 세 채점위원의 평균점수가 학생의 점수가 되므로 학생이 받는 점수는 구체적으로 부여된다. 본채점에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최소한 두 가지로 조직할 수 있다. 하나는 각 채점조가 자신들이 맡은 답안 전체 안에서 상대평가 개념의 등급을 부여하되, 평균점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조가 있을 경우 관리팀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학생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절대평가 개념의 등급 채점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대평가 외에도 특히 우수한 그룹과 저조한 그룹을 선별해내는 자격 평가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게 가산점 혹은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채점도 가능하다. 본채점에서 채점위원 간 점수 차가 클 경우 재채점을 실시함으로써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법학계 내부에서도 과거 사법시험의 응시자가 많을 경우 복수의 채점조가 투입되어 같은 문항을 채점했고, 현재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될 또 하나의 해결책은 논술 문항의 성격을 소폭 조정하는 것이다. 논술 시험은 그 특성상 정답의 범위가 좁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의 답안보다는 다양한 답안이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따라서 채점자 사이의 기준을 조정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재의 문항 성격으로도 10,000명 정도 채점할 경우에는 유형의 변화 없이 채점자 사이의 조정을 통한 신뢰도 확보가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나 응시자가 더 많아져서 채점자 수가 늘어날 경우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논술 시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채점이 더 용이한 방식으로 문항의 성격을 변경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 논의를 생략하겠지만 이미 대학 입시 논술 문항의 변화 과정에서 쌓은 경험이 투영되면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비용 문제이다. 신뢰도 있는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하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이 워낙 크다면 현실적 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채점료는 정하기 나름이지만, 현재 대입 논술의 분량과 채점료의 평균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해 본다면, 최대 1,200자를 쓰는 문항의 답안은 3,000원, 최대 1,600자를 쓰는 문항의 답안은 4,000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하나의 안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채점 관리비 빼고 채점료만 계산해 보면, 3명이 복수 채점할 경우 두 문항으로 이루어진 답안지 하나에 21,000원이므로 10,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억1천만원으로 산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채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대학입시에서 하듯이 답안지를 스캔하여 모니터로 보면서 채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하드웨어 대여 비용 및 프로그램 사용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일괄 채점>의 경우 채점위원을 차단된 지역에 입소시켜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효율성 면에서도 적절한 방식이 아니고 비용 면에서도 불리하다. 채점장에 와서 채점하게 하되 채점장 밖으로 답안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채점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관리는 쉽게 해결된다.

<일괄 채점>은 출제와 채점의 관리를 일원화시킬 수 있고, 채점 결과를 출제에 피드백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논술의 반영 정도를 높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채점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추가된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한다.

2) 2안: <글쓰기 자료>

<글쓰기 자료>는 출제와 채점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여 채점자의 재량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출제의 성격을 대폭 변화시켜서 논술의 활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괄 채점>과 대비되는 안이다. 이 안은 미국 LSAT에 포함된 writing sample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안이다. 현재의 논술 모델에 대해 비판 중 하나에 따르면, ①지금 모델은 난이도 있는 긴 지문을 제시하고 분석, 비판, 추론, 적용, 응용하도록 하는 유형이 주였기 때문에 종합적인 논술/논증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②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①다른 영역(언어이해 및 추리논증)과 평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②문제가 어려워서 응시생의 수험과 평가기관의 채점이 어려우며, ③지문구속성이 높아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채점의 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글쓰기 자료>는 이 비판 중 ②와 ③을 받아들여 출제에서 다음 세 가지 방향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첫째 문제의 소재와 형식을 개방하고, 둘째 지문 독해의 부담을 줄이며, 셋째 지문구속성을 완화시킨다. 결국 글쓰기 자료(writing sample) 개념을 도입하여 좀 더 열린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논술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 안은 출제에 변화를 꾀하는 안이기 때문에 새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리트 논술 문제들은 대체로 수준 높은 지문과 함께 출제되었는데 굳이 유형을 나누자면 요약·종합형, 논증 분석·추론형, 논증 비판·평가형, 적용·발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약·종합형은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요약하거나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논증 분석·추론형은 제시문의 주장과 논거 및 논증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결론이나 논거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논증 비

판·평가형은 제시문의 논증을 합당하게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적용·발전형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삼아 발전적 논의를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유형들은 모두 제시문을 기초로 구성된 문항들이나 반해 <글쓰기 자료>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유형들은 수준 높은 제시문 없이 출제하는 문항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선택근거 제시형과 사례-원칙 연계형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선택근거 제시형은 제시문을 간소화하여 독해 부담을 없애며, 주어진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판단 또는 선택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다시 두 유형이 포함된다. 하나는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게 하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주어,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게 하는 양자택일형이다. 다른 하나는 셋 이상의 선택지를 주고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다수의 사건 또는 행위와 같은 항목들을 분류하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시하게 하는 다자택일형이다.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가) 양자택일형

A시(市)는 교통난을 해소할 대책의 하나로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산을 관통하여 도로를 건설하면 2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 경우 그 산에서 식하는 C종 개구리들의 개체수가 급감할 수 있다. 다음 <고려사항>을 기초로 하여 B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해야 할지, 아니면 그 산을 우회하여 도로를 건설해야 할지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 <고려 사항> —

- (1) A시의 한 해 예산은 1조 원 정도이며, 복지예산증대로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다.
- (2) C종 개구리의 개체 수 감소는 B산 일대 다른 동물들의 개체 수 감소를 낳을 수 있다.

(나) 다자택일형

<보기>의 사안들은 ‘정당방위’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상황들이다. 이것들을 정당화될 수 있는 것과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그렇게 분류한 이유를 제시하시오.

— <보 기> —

- A : 경쟁자에게 매수되어 나에게 부당한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을 역으로 매수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행위
- B :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저항하다가 그 사람을 죽인 행위
- C : 적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 핵공격

다음으로 사례-원칙 연계형은 구체적 사례와 일반적 원칙을 연결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는데, 원칙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사례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원칙을 구성하거나 정당화하는 문항 등이 출제될 수 있다. 원칙을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은 기존의 적용·발전형과 문항의 구성은 유사하나, 제시문 대신 적용할 원칙이나 관점을 간략히 제시하는 형태이다. 사례를 통해 원칙을 판단하거나 구성하는 유형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칙에 대한 판단이나 일반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도출하거나, 스스로 원칙을 구성하여 다시 구체적 판단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한다. 예시문항은 다음과 같다.

(다) 원칙을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

아래 <사례>의 경우에 <보기> 중 어떤 원칙에 의거하여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하여 <조건>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 <사 례> —

쉬지 않고 일을 맡아서 계속 항해하고 있는 어떤 배가 이번에는 A항에서 B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맡았다. 택할 수 있는 항로는 둘 중 하나이다. 하나는 암초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지만 지름길이라 3일 만에 항해할 수 있는 항로이다. 다른 하나는 암초가 없어서 안전하지만 둘러 가기 때문에 7일을 항해해야 하는 항로이다. 7일이 걸릴 경우 B항에 이 물건을 내려놓으면 곧 바로 다른 물건을 싣고 C항으로 출발해야 하지만 3일이 걸릴 경우 오랜만에 4일간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다. 선원들 대부분은 오랜 항해에 지쳐서 3일 항로를 택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배의 조타수는 최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항해를 맡기면 암초가 많은 바다에서도 무사히 항해를 끝낼 수 있으리라고 선원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장 입장에서는 안전한 7일 항로를 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정이지만, 선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성이 높은 3일 항로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장 역시 그 조타수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배는 항해 중에 그 조타수의 실수로 사고를 당해서 화물의 상당 부분을 잃고 말았다.

— <보 기> —

- 결정권자 책임의 원칙 : 가장 상위의 의사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개인 책임의 원칙 :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집단 책임의 원칙 : 집단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보 기> —

1. 자신이 선택한 원칙이, 배제한 원칙과 비교해 볼 때, 왜 가장 적절한지 근거를 밝히시오.
2. 복수의 원칙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원칙들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3. <보기>의 원칙 외에 더 적절한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근거를 밝히시오.

(라) 사례를 통해 원칙을 판단하거나 제시하는 유형

다음 <보기>의 사안들에서 행위자 A, B, C의 행위가 정당한지 각각 판단하고, 세 판단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 보시오.

<보기>

가. 평화주의자 A는 병역의무이행을 거부하고자 도피 중이다.

나. 평화주의자 B는 병역의무이행을 거부하기로 하고, 그 뜻을 알리기 위하여 도심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1인 시위를 하였다.

다. 경찰관 C는 B의 뜻에 공감하여, B의 교통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였다.

<글쓰기 자료>를 반영할 경우 현재의 리트 논술 모델에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문항은 종합적 논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적용·발전형을 유지하고 나머지 한 문항은 지문과 문제구조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고력과 논증 구성 능력에 주안점을 둔 선택근거 제시형을 출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 문항은 선택근거 제시형을 출제하고 다른 한 문항도 지문이 없는 문항으로 바꾸어 사례-원칙 연계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방식이건 전보다 지문독해 부담과 문항의 지문구속성을 줄이고, 문제의 소재와 형식을 개방한다면 수용될 수 있다. 이 안은 리트 개선안이 채택되어 논술 시험 시간이 줄어들 경우, 지문이 긴 문제를 주기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도 고려한 것이다.

3) 3안: <위탁 채점>

앞의 두 안은 모두 큰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을 느끼는 안이다. 하나는 채점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고, 다른 하나는 문항 성격에 큰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면서 양쪽 모두 논술의 활용성 증대라는 원하는 결과를 확실히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긴 어렵다. <위탁 채점>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 대안이다. 앞의 두 안이 확실한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안이라면, <위탁 채점>은 그런 부담 없이, 큰 변화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동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이다. 채점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의뢰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만 협의회에서 채점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안이 그것이다.

<위탁 채점>의 경우에는 <일괄 채점>에서 논의했던 방식을 응시생 전체가 아니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위탁한 학생의 답안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

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체 채점위원 워크숍 → 문항별 채점위원 워크숍 → 가채점 → 본채점 → 재채점’ 과정을 밟으면 되기 때문이다. 단 채점 방식을 고려할 때 결정할 문제는 남아있다. 복수의 대학원이 위탁을 희망할 경우 ①각 대학원별로 위탁된 학생을 모집단으로 해서 채점할 것인지 아니면 ②그 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위탁된 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해서 일괄 채점한 결과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전문대학원이 채점 의뢰를 1단계에서 하느냐 2단계에서 하느냐가 변수로 작용한다. 2단계에서 채점을 의뢰할 경우는 채점 대상의 수가 많지 않지만 1단계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규모가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①의 경우 모집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직접 경쟁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채점조에서 상대평가 개념으로 채점해서 결과를 통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학생들이 복수 지원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대학원을 담당하는 두 채점조가 한 학생의 답안지를 중복해서 채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생긴다. ②의 경우에는 한 학생의 답안지는 한 번만 채점되지만 위탁된 학생 수가 많을 경우 한 채점조가 전체 학생을 채점할 수 없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일괄 채점>에서 해결할 문제를 똑같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위탁 규모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일단 한 채점조가 채점기간에 대응할 수 있는 최대량을 정하고, 채점을 의뢰받은 학생 수가 문항 당 3개 이하의 채점조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경우에는 ②의 방식으로 운영해도 무방할 것이다. 채점조 사이의 사전 협의와 조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뢰받은 학생 수가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비용의 중복 지출이 있더라도 ①의 방식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이후 더 많은 개별 대학원이 채점을 의뢰한다면 아예 <일괄 채점>의 채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 고급 사고능력시험의 표준으로서의 법학적성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100-8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 T 02 888 2034 F 02 888 202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_info.leet.or.kr 법학적성시험_www.leet.or.kr